

연구보고 2012-35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 지원기준 마련 연구

양미선 서문희

머 리 말

현재 13만명이 넘는 영유아가 하루 7시간 이상 어린이집에서 머물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인적,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연령이 어릴수록 그 영향이 더 크다. 영유아 발달특성상 인적환경, 즉 보육교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물리적 환경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환경개선비 등의 기능보강 지원사업 현황과 지원 실태 및 요구 등을 조사 분석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기능보강비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용자지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개선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본 보고서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비롯한 증개축비, 개보수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 지원 시 활용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시군구 기능보강비 담당 공무원, 법인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6
4. 용어의 정의	9
5. 연구의 범위	10
II. 관련 법 및 제도	11
1. 관련 법	11
2. 제도	11
III.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 지원사업 현황 및 요구	21
1. 기능보강비 사업 현황	21
2. 기능보강비 지원 실태 및 요구	25
3.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시 문제점	37
4. 정책 시사점	38
IV.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	40
1. 시·도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	40
2.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의 적절성	45
3.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선정기준	60
4. 정책 시사점	70
V.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개선방안	72
1.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 지원 기준	72
2. 정책 제언	81
3. 맺는말	84
참고문헌	86

ABSTRACT	87
부 록	89
부록 1. 부록 표	91
부록 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선정기준표	96
부록 3. 시도 및 시군구 조사표	110

표 차례

〈표 I-3- 1〉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설문조사 내용	7
〈표 I-3- 2〉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시군구 조사	8
〈표 I-3- 3〉 법인어린이집 일반적 특성	8
〈표 I-3- 4〉 심층면담 일정	9
〈표 II-1- 1〉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	16
〈표 II-1- 2〉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	18
〈표 III-1- 1〉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사업 현황	22
〈표 III-1- 2〉 어린이집 확충 지원 현황: 2011	23
〈표 III-1- 3〉 시도별 환경개선비 및 장비비 지원 현황	24
〈표 III-2- 1〉 증개축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국공립어린이 조사	26
〈표 III-2- 2〉 기능보강비 지원 횟수: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27
〈표 III-2- 3〉 증개축비 지원 횟수: 법인어린이집 조사	28
〈표 III-2- 4〉 개보수비 지원 횟수: 법인어린이집 조사	29
〈표 III-2- 5〉 기능보강비 지원 금액: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30
〈표 III-2- 6〉 개보수비 지원 금액: 법인어린이집 조사	30
〈표 III-2- 7〉 기능보강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32
〈표 III-2- 8〉 개보수비 어린이집 부담액: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33
〈표 III-2- 9〉 개보수비 어린이집 부담액: 법인어린이집 조사	34
〈표 III-2-10〉 개보수 실시 주기: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35
〈표 III-2-11〉 증개축 공사 이유: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37
〈표 IV-1- 1〉 시도 정부지원시설 증·개축 선정기준	42
〈표 IV-1- 2〉 시도 정부지원시설 환경개선비 및 장비비 지원 선정기준	43
〈표 IV-2-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선정기준의 적절성(1+2순위)	45
〈표 IV-2-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역 선정기준의 적절성(1순위)	46
〈표 IV-2- 3〉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역 선정기준의 적절성(2순위)	47
〈표 IV-2- 4〉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1+2순위)	47
〈표 IV-2- 5〉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1순위	48
〈표 IV-2- 6〉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2순위	48

〈표 IV-2- 7〉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49
〈표 IV-2- 8〉 국공립어린이집 추가확충 시 설치지역	49
〈표 IV-2- 9〉 추가 확충 시 설치수	50
〈표 IV-2-10〉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의 적절성(1+2순위)	51
〈표 IV-2-11〉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의 적절성(1순위)	52
〈표 IV-2-12〉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의 적절성(2순위)	52
〈표 IV-2-13〉 환경개선비 세부 지원기준	53
〈표 IV-2-14〉 장비비 선정기준의 적절성(1+2순위)	54
〈표 IV-2-15〉 장비비 선정기준의 적절성(1순위)	55
〈표 IV-2-16〉 장비비 선정기준의 적절성(2순위)	56
〈표 IV-2-17〉 장비비 세부기준의 적절성	56
〈표 IV-2-18〉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의 적절성(1+2순위)	57
〈표 IV-2-19〉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의 적절성(1순위)	58
〈표 IV-2-20〉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의 적절성(2순위)	59
〈표 IV-2-21〉 환경개선 용자지원 세부기준의 적절성	60
〈표 IV-3- 1〉 기능보강비 선정기준	61
〈표 IV-3- 2〉 시도별 영유아수: 2011	62
〈표 IV-3- 3〉 시·도별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63
〈표 IV-3- 4〉 시·도별 정원충족률: 2011	64
〈표 IV-3- 5〉 지역규모별 정원 대비 현원: 2011	65
〈표 IV-3- 6〉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2000~2011	66
〈표 IV-3- 7〉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67
〈표 IV-3- 8〉 시·도별 유치원 수	67
〈표 IV-3- 9〉 시·도별 재정자주도	68
〈표 IV-3-10〉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신규인증율	69
〈표 IV-3-11〉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신규 인증 평가인증 평균점수	70
〈표 V-1- 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선정기준표	73
〈표 V-1- 2〉 지역규모별 지방 재정자주도	74
〈표 V-1- 3〉 증개축비 선정기준표	76
〈표 V-1- 4〉 개보수비 선정기준표	77
〈표 V-1- 5〉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금 선정기준	80

그림 차례

[그림 II-1-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 절차	12
[그림 II-1-2] 용자지원 절차	18
[그림 III-1-1] 연도별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 규모	22
[그림 III-2-1] 기능보강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32
[그림 III-2-2] 어린이집 개보수 실시주기: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36
[그림 III-2-3] 증개축 공사 이유: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37
[그림 IV-2-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선정기준의 적절성(1+2순위)	46
[그림 IV-2-2]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의 적절성(1+2순위)	51
[그림 IV-2-3] 장비비 선정기준의 적절성(1+2순위)	55
[그림 IV-2-4]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의 적절성(1+2순위)	58
[그림 IV-3-1]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63
[그림 IV-3-2]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64
[그림 IV-3-3]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65

부록 표 차례

〈부표 IV-1-1〉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91
〈부표 IV-1-2〉 재정자립도 전국 단체별 최고·최저	92
〈부표 IV-1-3〉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	93
〈부표 IV-1-4〉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	93
〈부표 IV-1-5〉 재정자립도 자치단체별 현황	94
〈부표 IV-1-6〉 재정자립도 전국 단체별 최고·최저	94
〈부표 IV-1-7〉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	95
〈부표 IV-1-8〉 시도별 지방세 구성 비율	95
〈부표 V-1-1〉 지역규모별 지방 재정자립도	98
〈부표 V-1-2〉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선정기준표	99
〈부표 V-1-3〉 증개축비 선정기준표	104
〈부표 V-1-4〉 개보수비 선정기준표	105
〈부표 V-1-5〉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	106
〈부표 V-1-6〉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금 선정기준	109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능보강비 및 민간개인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여 정부 재정의 공정한 운영 및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 관련 법 및 제도, 통계자료 수집 분석
 -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 관련 문제점 및 요구 분석
 -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및 민간개인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금 지원 기준 마련
 -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및 민간개인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금 지원 관련 개선방안 도출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정부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및 민간개인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금 지원 관련 문헌 수집 분석,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16개 시도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 비교 분석
 -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민간개인어린이집담당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법인어린이집의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의 기능보강비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어린이집 206개소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정부 지원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민간개인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실시
 - 보육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정보센터장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하여 조사표 구성 및 정책 관련 의견 수렴

2. 기능보강비 지원 현황 및 요구

-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환경개선, 장애아시설환경개선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 총 사업예산은 2012년 기준 11,86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축소됨.
- 2011년도 시도별 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 중 23.3%인 1,179,286천원이 경기도에 지원되고, 교부액도 경기도가 28개소로 많음.
- 국공립어린이집 증개축 실시 비율은 34.8%, 법인어린이집 10% 미만임.
 -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비율은 53.3%, 법인어린이집 30.6%임.
 -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금액은 1회 평균 2,134.1만원, 법인어린이집은 평균 4,377.4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보다 2,000만원 정도 더 많음.
-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기능보강비 지원 시 선정기준을 조사한 결과 개원한 지 일정기간 이상된 어린이집 순으로 지원이 36.6%,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긴급상황 발생 어린이집 지원 22.8%임.
- 개보수를 위한 운영비 부담은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당 연평균 1,225.5만원, 법인어린이집 평균 3,013만원임.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실시한다는 비율이 70%, 1년에 한번 10.6%, 2~3년에 한번은 7.5%, 5.8%로 10% 미만임.
- 국공립어린이집은 증개축 공사 이유로 전반적 어린이집 노후화가 59.6%로 많고, 부대시설 공간 확보 16.9%임.
- 민간가정어린이집 심층면담결과, 환경개선 용자지원 최대한도액이 어린이집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도움이 되지 않음.
 - 용자지원 이율도 시중 은행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정부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
 - 용자지원 신청 시 시도로부터 지원신청 자격을 얻어도 담당 은행에서 담보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신청절차를 반복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3.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역 선정기준 1순위는 보육수요가 44.6%,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 지역적 특성, 부지확보, 재정자주도는 모두 10~16%대임.
 - 2순위는 지역적 특성이 24.7%, 보육수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 부지 확보, 재정자주도 등은 15~20% 사이임.
- 환경개선비 선정기준 1순위는 사업의 시급성 72.6%, 노후화 12.4%이고, 2순위는 노후화 정도 47.3%, 예산지원 여부와 건축년도 10%대임.
 - 환경개선비 세부기준으로 건축년도 5년 단위, 예산지원 3년 이내, 평가인증 여부, 자부담 비율, 정원충족률, 취약지역 해당 여부 등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장비비 선정기준 1순위는 노후화가 47.3%, 예산지원 여부, 취약보육 운영은 10%, 나머지 선정기준 10% 미만임.
 - 2순위도 노후화 정도 20.4%, 지역 환경조건 15.4%, 구입시기 15.1%, 예산지원 여부 14.5%임.
 - 장비비 세부기준으로 예산지원 3년 단위, 평가인증 여부, 자부담 여부, 정원충족률, 취약지역 여부, 행정처분 여부
-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으로 1순위는 74.2%가 사업의 시급성, 나머지 기준은 노후화 9.1% 제외하고 대체로 5% 내외임.
 - 2순위는 노후화 정도가 43%, 어린이집 용자금 비율과 행정처분 이력이 각각 12.4%, 12.9%임.
 - 세부기준으로 건축년도 5년 이내, 평가인증 여부, 정원충족률, 취약지역 여부, 행정처분 여부가 높게 나타남.

4.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개선 방안

가.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안)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기준으로 지역특성,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 정원충족률, 지방재정자주도, 전년도 실집행률을 선정함.

- 항목별 배점은 지역특성 45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와 정원충족률 각 20점, 재정자주도 10점, 전년도 실집행률 5점임.
- 증개축비 지원기준으로 시급성, 노후도, 정원충족률, 지역특성, 예산지원, 평가인증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 7가지 요인을 선정함.
 - 항목별 배점은 시급성 25점, 노후도와 정원충족률 각 20점, 지역특성 15점, 예산지원과 평가인증 각 10점, 행정처분이력 최대 -10점 감점
- 개보수비 지원기준도 증개축비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시급성, 노후도, 예산지원, 지역특성, 정원충족률, 평가인증, 행정처분이력 등을 선정함.
 - 항목별 배점은 시급성 40점, 노후도 20점, 예산지원 5점, 지역특성 10점, 정원충족률 10점, 평가인증 10점, 행정처분이력 최대 -10점 감점
-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 지원기준으로 시급성, 노후도, 용자금 비율, 정원충족률, 평가인증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 7가지 요인을 선정함.
 - 항목별 배점은 시급성 40점, 노후도와 용자금 비율 각 20점, 정원충족률 10점, 평가인증 10점, 행정처분이력 최대 -10점 감점

나. 정책 제언

- 기능보강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규모를 확대함.
 - 기능보강지원 예산이 전체 보육사업 국고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7%, 2009년 1.2%에서 2010년 0.4%로 절반 이상 크게 줄었고, 2011년 0.5%, 2012년 0.4%선을 유지함. 보육사업 국고예산 1%로 확대함.
- 기능보강비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함.
- 실적 위주의 사업 추진보다는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최대한도액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저금리 지원하며, 신청절차를 시도와 담당은행을 일원화함.
-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 낭비 최소화를 위해 기능보강지원사업 관리 강화하고 기능보강비 선정기준 적용을 의무화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2008년 113만명에서 2011년 135만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만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전년 대비 이용 아동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특히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2009년 보육실태조사 평균 7시간 45분에서 2011년 7시간 22분으로 20분 정도 짧아졌으나(서문희·양미선, 2011)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났다.

이처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이곳에서 제공하는 인적,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연령이 어릴수록 그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은 교사 즉 인적환경이나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물리적 환경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등의 정부지원시설에는 증개축비 및 환경개선비, 장비비 등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개인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의 민간부문 어린이집에는 환경개선 융자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는 1,201,300원/㎡를 지원하며, 기자재 구입비는 개소당 2~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는 환경개선비로 시설당 최대 2천만원, 시설이전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유희정 외, 2009) 결과, 어린이집의 개보수 공사 시 정부지원을 받았다는 경우는 24.5%로 1/3정도이며, 지원 시설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69.4%로 가장 많고, 법인 59.1%이며, 나머지 어린이집 유형은 15% 미만이였다. 또한 주로 정부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법인어린이집보

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되었으며,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보다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에 지원되었다. 이는 정부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능보강비뿐만 아니라 민간개인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용자 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심사기준표 부재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증개축비 지원 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환경개선비 및 장비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재지원 받는 등 지원 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형평성 등의 논란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와 민간개인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 재정의 공정한 운영 및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기능보강비 지원 및 환경개선 용자금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과 요구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와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관련 법 및 제도,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한다.

둘째,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및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관련 문제점 및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및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안)을 마련한다.

넷째,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및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및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관련 법 및 제

도, 통계자료를 검토하며, 16개 시·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환경개선비, 장비비 등의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을 비교, 분석한다.

나. 조사연구

1) 시도 및 시군구 설문조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환경개선비 및 장비비 등의 기능보강비와 민간개인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금 지원 기준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민간개인어린이집 담당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2012년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자문회의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개인어린이집 심층면담을 통하여 1차 추출하였고, 조사표 작성 후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전문가 서면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증개축 및 개보수비 등의 환경개선비, 장비비,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금 지원 기준의 적절성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3-1〉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1. 지원기준의 적절성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 기준의 적절성 - 환경개선비(증축 및 개보수비) 지원 기준 및 세부기준의 적절성 - 장비비 지원기준 및 세부기준의 적절성 -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 및 세부기준의 적절성
2. 일반특성	- 연령, 성별, 학력, 직급

조사 결과,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248명 중 186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률 75%이다. 조사에 참여한 보육담당자는 시도 6.5%, 시군구 보육담당자 93.5%이다. 구체적으로 여자가 65.6%, 남자 34.4%로 여자가 두배 가까이 많고, 연령은 40~50세 미만이 절반을 차지한다. 직급은 7급이 48.4%로 많고, 6급과 8급이 20%대이다.

〈표 1-3-2〉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시군구 조사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학력	
여자	65.6(122)	고졸	2.7(5)
남자	34.4(64)	대학졸(3년제 이하)	16.1(30)
연령		4년제 대졸	73.1(136)
35세 미만	22.0(41)	대학원 졸	8.1(15)
35~40세 미만	12.9(24)	직급	
40~45세 미만	27.4(51)	9급	2.7(5)
45~50세 미만	23.7(44)	8급	20.4(38)
50세 이상	14.0(26)	7급	48.4(90)
담당지역		6급	28.5(53)
시도	6.5(12)		
시군구	93.5(174)		
전체	100.0(186)	전체	100.0(186)

2) 어린이집 조사

법인어린이집의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의 기능보강비 지원 실패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어린이집 206개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법인어린이집의 일반적 특성은 <표 1-3-3>과 같다. 80~99인이 28.6%로 가장 많고, 100~149인이 25.3%, 50~79인 어린이집이 18%로 80인 이상 어린이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역은 읍면이 43.2%로 28.2%, 28.6%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많았다.

〈표 1-3-3〉 법인어린이집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정원		지역	
49인 이하	15.5(32)	대도시	28.2(58)
50~79인	18.0(37)	중소도시	28.6(59)
80~99인	28.6(59)	읍면	43.2(89)
100~149인	25.2(52)		
150인 이상	12.6(26)		
전체	100.0(206)	전체	100.0(206)

다. 심층면접조사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등의 정부지원시설과 민간개인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은 어린이집연합회 협조를 얻어 어린이집 유형별로 실시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표 I-3-4>와 같다.

<표 I-3-4> 심층면담 일정

장소(일시)	면담자	내용
서울(8.3)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5명	환경개선비 및 장비비 지원 여부, 환경개선비 지원 횟수 및 지원액, 환경개선비 지원 시 지원기준, 환경개선비 및 장비비 지원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서울(4.20)	법인어린이집 원장 3명	
서울(11.20)	민간개인어린이집 원장 4명	

라. 자문회의 및 간담회

보육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정보센터장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표 구성 및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용어의 정의

기능보강비 지원

기능보강비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개선 용자금 지원

민간개인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한 용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연구의 범위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보육 현장에서 기능보강비 지원 시 필요한 지원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증개축비, 개보수비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민간개인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이다. 장애아전담시설 신축이나 장애아시설 장비비 지원 등의 경우는 사업 규모가 작아 지원기준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비롯한 정부지원시설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와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 개발에 한정하여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Ⅱ. 관련 법 및 제도

제2장에서는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및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 지원 관련 법과 2012년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 지원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련 법

영유아보육법 제 36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 37조는 제 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2. 제도

가.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증축·개축,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용 등의 지원을 통하여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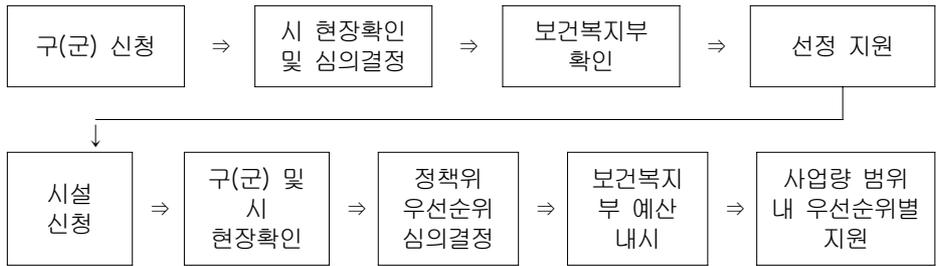
기능보강비 국고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설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장애아보육환경개선 개보수, 장애아보육환경개선 장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어린이집이 포함된 복합시설 설치 또는 전경련 등 타 기관에서 재정 지원이 결정된 경우 등 국비 지원 없이도 확충이 가능한 경우, 신축사업 신청지역 인근, 예를 들어 예정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거나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이 낮을 경우 기능보강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세부 지원 절차는 그림 II-1-1과 같다.



[그림 II-1-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 절차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고,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국공립시설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원단가는 국비, 지방비 포함하여 1,201,300원/㎡이며, 국비 최대 지원액은 237,857천원이다(표 II-1-1 참조).

국공립시설 신축은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 공공시설과 시·군·구 읍면동 청사 신축·증개축 시 어린이집을 복합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도

시 개발·정비 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안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대학 내 또는 종교법인이 소유한 부지·건물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 확충을 추진하며, 장애인담시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적극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설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시설 매입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은 신축 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 어린이집이 많아 추가로 시설 확충이 불필요할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어린이집이 아닌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한다. 이러한 경우 신축비는 동사무소, 학교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건물 감정평가액과 시설 리모델링비 포함하여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한도액 237,857천원까지 지원한다(표 II-1-1 참조). 특히, 농어촌 등 열악한 민간시설을 우선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시설 매입 시 국민연금기금('94~'97년)을 받아 설립한 어린이집을 우선 검토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신축 외에도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한다.

이러한 시설에는 전문가의 공사 견적이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개소당 50,000천원이다. 특히, LH공사가 임대주택 어린이집을 무상 제공받아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시설 운영자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어린이집을 우선하고,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 단서 3호에 따라 국공립 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하지 않고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는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협의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세대주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라) 개원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기자재 구입비는 연 내에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장애아전담시설 신축은 개소당 80,000천원, 일반시설 신축은 개소당 60,000천원, 이전 또는 대체 신축은 개소당 30,000천원, 민간시설 매입 개소당 20,000천원, 공동주택 개소당 40,000천원을 지원한다.

기자재 구입비는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등은 구매 가능하나, 차량구입비 및 시설 공사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존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 재이용 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마) 장애전담시설 신축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아전담시설에 대하여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 후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현지 점검 후 최종 결정된다.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별로 보육 수요 및 장애아 전담(통합)시설 운영 현황을 감안하여 지원하며, 전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전담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갑작스런 장애아 보육수요 증가, 기존 장애아전담시설 폐·휴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396㎡까지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국비, 지방비 포함하여 201,300원/㎡이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건축제한 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2) 증개축비 지원

증·개축비는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에 지원하며,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132㎡까지 지원하고,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751,440원/㎡이다.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의 안전도 등을 검토해야 하며, 개축의 경우 부분 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시설 설치 연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지원시설에 재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등은 예외로 한다.

시설 증·개축 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 준수 여부와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 기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개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 개보수비 지원

시설 개·보수비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 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증개축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고,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 공무원 확인 후 결정할 수 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30,000천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한다.

4) 장비비 지원

장비비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장비비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비 노후화 및 보육 아동이 증가한 경우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 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의 공기질 측정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2,000천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며, 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비는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트 등), 실내공기질 개선물품(공기청정기 등), 기타(손씻기 시설 등) 등이다. 지원 시 영유아의 안전과 급식 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표 II-1-1〉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금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1) 국공립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330㎡까지 지원, 단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탄력 지원 · 지원단가: 1,201,3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 최대 지원액 237,857천원 (설계용역비 제외)
2) 시설 매입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237,857천원

(표 II-1-1 계속)

구분	지원금
3)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비	· 지원단가: 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4)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 개소당 396㎡ 지원 · 지원단가: 1,201,300/㎡(국비, 지방비 포함)
5) 기자재 구입비	· 장애아전담 시설 신축 80,000천원/개소 · 일반 시설 신축 60,000천원/개소 · 이전 또는 대체 신축 30,000천원/개소 · 민간시설 매입 20,000천원/개소 · 공동주택 40,000천원/개소
2. 증개축비	· 개소당 132㎡ 지원,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 지원단가: 751440원/㎡
3. 개보수비	· 시설 규모, 개보수 필요 정도에 따라 지원 ·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4. 장비비	· 2,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나.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 지원

정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용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은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놀이 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실내 계단 충격흡수장치 설치 및 조리장 급식위생시설 개선, 방수전기공사, 난방 개선 등의 시설 개선, 신축비 및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의 시설 이전 등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1) 용자조건 및 상환방법

용자조건은 환경개선과 시설이전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재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원하며, 용자규모는 총 150억원이다. 시설당 환경개선비 최대 2천만원, 시설이전비 최대 1억원을 용자 지원한다. 단, 용자지원 시설의 폐원 또는 대표자 변경 시에는 용자 지원금을 회수한다.

〈표 II-1-2〉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

구분	한도액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	이율
1. 환경개선	시설당 최대 2천만원	- 3년 거치 4년 상환 - 연4회 원금균등 분할 상환	변동금리 (2012년 2/4분기 3.55%)
2. 시설이전	시설당 최대 1억원	- 3년 거치 4년 상환 - 연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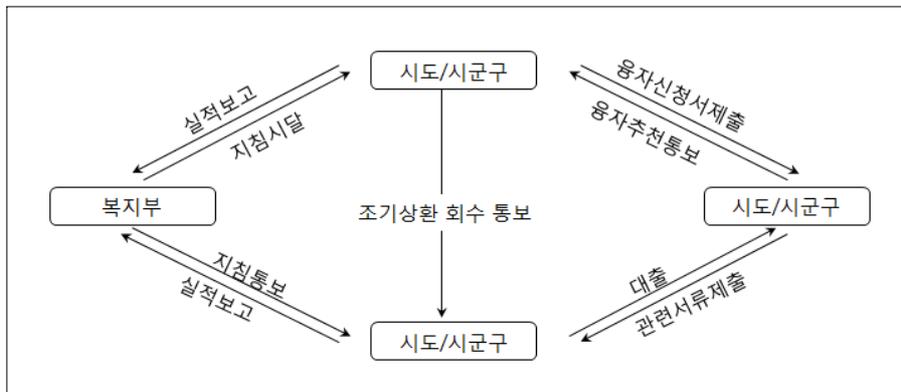
주: 용자 지원 시 용자지원 금융기관 여신규정 등에 의거 제한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2).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사업시행 안내.

2) 용자절차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용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용자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먼저 환경개선비 용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둘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용자 지원금을 결정하고, 환경개선 용자추천 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그림 II-1-2] 용자지원 절차

셋째, 환경개선 용자 추천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어린이집 대표자는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용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용자불가 통보

를 받은 어린이집은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융자 추천 결정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은 검토 후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현황을 유지·관리한다.

넷째, 2010년과 2011년도에 융자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 이전을 위해 융자를 다시 신청했을 때 종전의 융자 원리금은 상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 융자와 관련된 증빙서류 허위 작성 및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융자금이 회수되며, 제한된 기금 운용 소진 시 융자추천과 별도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3) 행정사항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을 위한 행정 사항으로는 자금 운용, 융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독려 등이 있다. 먼저 자금 운용은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융자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는 융자 사업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추천 받은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목적에 의거 융자금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지원 어린이집의 폐원, 대표자 변경, 융자지원금과 실제 사용금액의 차이가 있을 시 그 차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융자지원 현황 및 상환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기한 내 융자지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독려를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지원사업을 통하여 어린이집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 및 지역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융자지원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 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실적보고

시·도지사는 융자추천 실적을 매월 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

고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융자지원 실적 등을 각 시·도별로 취합하여 매월 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통보한다.

5) 기타사항

기타 사항으로,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융자운용상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Ⅲ.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 지원 사업 현황 및 요구

제3장에서는 최근 5년간 중앙 정부의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현황을 사업별로 살펴보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등의 정부지원시설의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지원 실태 및 요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시설의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기능보강비 사업 현황

가. 사업 규모

최근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1>과 같다.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환경개선, 장애아시설환경개선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예산은 2012년 기준 11,86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정도 삭감되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2008년 24,039백만원에서 2010년 9,438백만원까지 삭감되었다가 다시 증액되는 등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사업량도 마찬가지로 2012년 948건으로 2011년보다 다소 줄었다. 2008년 926건에서 2010년 667건으로 30% 정도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사업예산에 따라 사업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 2008년과 비교할 때 2011년과 2012년은 사업량은 비슷하나 예산규모는 절반 수준이다. 이는 지원단가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보다 단가가 낮은 공동주택리모델링비나 환경개선비 지원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아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09년 40개소에서 2011년 92개소로 두 배이상 증가하였고, 2012년도 2011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2년 기능보강비 사업별 예산을 보면, 개보수비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어린이집 확충은 30% 수준 정도이다. 2008년 예산 편성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확충이 전체 예산의 65%, 환경개선이 35%인 것과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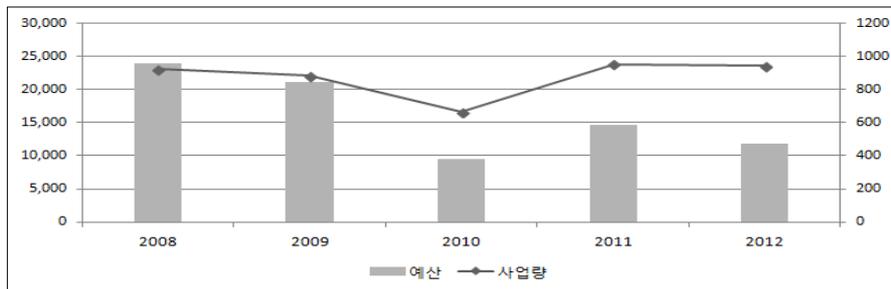
적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2008년 9,911백만원에서 1/5로 대폭 감소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지원하는 장비비도 같은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반해 증개축비와 개보수비는 각각 2,000백만원, 5,000백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아시설환경개선비는 2009년 292백만원에서 2010년 276백만원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 사업량 증가와 함께 예산도 354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장애아시설환경개선비는 장비비 지원보다는 개보수비 지원 비율이 더 높다.

〈표 III-1-1〉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사업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전체	926	24,039	883	21,147	667	9,438	955	14,650	948	11,867
어린이집 확충										
전체	241	15,534	241	13,198	60	3,385	60	3,395	61	3,632
국공립 신축	50	9,911	38	7,532	10	1,982	10	1,982	10	1,982
장애아전담 신축	3	714	2	476	1	238	1	238	2	476
공동주택리모델링	38	950	42	1,050	19	475	19	475	19	475
기자재	150	3,960	159	4,140	30	700	30	700	30	700
어린이집 환경개선										
전체	685	8,505	600	7,657	567	5,767	800	7,901	795	7,880
증개축	50	2,480	49	2,430	20	992	45	2,232	45	2,230
개보수	385	5,775	334	5,010	302	4,530	351	5,265	350	5,250
장비비	250	250	217	217	2,458	245	404	404	400	400
장애아시설환경개선										
전체	-	-	42	292	40	276	92	354	92	354
개보수			15	225	16	240	16	240	16	240
장비비			27	67	24	36	76	114	76	114

자료: 보건복지부(2012). 내부자료.



[그림 III-1-1] 연도별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 규모

다음은 2011년도 시도별 어린이집 확충 지원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표 III-1-2>와 같이, 2011년 어린이집 확충 총 예산 중 23.3%인 1,179,286천원이 경기도에 지원되었다. 경기 지역은 타 지역보다 0~5세 영유아 인구가 많아 어린이집 공급 부족이 심각한 지역으로 어린이집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타 지역보다 지원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충북 764,542천원, 서울 611,429천원, 강원 561,430천원 순으로 지원되었다. 광주와 제주, 인천이 5천만원 이하로 지원 규모가 적다.

교부액과 마찬가지로 지원 시설수도 경기지역이 28개소로 가장 많고, 강원과 서울이 각각 10개소이며, 나머지 지역은 1~8개소 사이이다. 대전 지역은 2011년 어린이집 확충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III-1-2> 어린이집 확충 지원 현황: 2011

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시설 신축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소계	
	교부액	시설수	교부액	시설수	교부액	시설수	교부액	시설수	교부액	시설수
전체	2,806,547	21	475,714	2	540,000	22	1,230,000	56	5,052,261	101
서울	396,429	2	-	-	25,000	1	190,000	7	611,429	10
부산	277,714	2	-	-	50,000	2	100,000	4	427,714	8
대구	25,000	1	-	-	25,000	1	40,000	2	90,000	4
인천	25,000	1	-	-	-	-	20,000	1	45,000	2
광주	-	-	-	-	-	-	15,000	1	15,000	1
대전	-	-	-	-	-	-	-	-	-	-
울산	-	-	-	-	-	-	30,000	1	30,000	1
경기	421,429	4	237,857	1	200,000	8	320,000	15	1,179,286	28
강원	446,430	4	-	-	25,000	1	90,000	5	561,430	10
충북	396,685	2	237,857	1	25,000	1	105,000	4	764,542	8
충남	-	-	-	-	50,000	2	40,000	2	90,000	4
전북	198,215	1	-	-	25,000	1	50,000	2	273,215	4
전남	198,215	1	-	-	50,000	2	85,000	5	333,215	8
경북	198,215	1	-	-	25,000	1	35,000	2	258,215	4
경남	223,215	2	-	-	25,000	1	90,000	4	338,215	7
제주	-	-	-	-	15,000	1	20,000	1	35,000	2

자료: 보건복지부(2012). 내부자료.

어린이집 확충 사업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는 경기와 강원예 전체 예산의 16% 정도인 4억 4천만원과 4억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으며 서울과 충북은 3억 9천만원 정도가 배정되었다. 전북과 전남, 경북이 2천만원 미만으로 지원 예산이 가장 적다. 시설수도 경기와 강원이 각각 4개소, 서울과 부산, 충

북, 강원이 각각 2개소씩이다.

장애전담시설 신축은 경기와 충북 두 지역에만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원예산은 2억 3천만원 정도이며, 각각 1개소씩 확충이 추진되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비도 마찬가지로 경기지역 8개소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다. 부산과 충남, 전남이 각각 5백만원씩 2개소이며 나머지는 1개소씩이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사업지원이 없었다.

다음 <표 III-1-3>은 시도별 증·개축비와 개보수비, 장애아보육 개보수, 장비비 등의 환경개선비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보육아동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예산 배정이 가장 많다. 서울은 전체 예산 중 17.8%인 1,178,785천원, 경기도는 12.8%인 842,608천원을 배정받았다. 대전과 울산이 31,500천원, 79,000천원으로 지원 예산이 가장 적다. 시설수도 서울이 146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 113개소이며 대전, 울산 이외의 지역은 10~30개소 수준이다.

<표 III-1-3> 시도별 환경개선비 및 장비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환경개선비						장비비				소계	
	증개축		개보수		장애아보육개보수		장비비		장애아보육장비			
	교부액	시설수	교부액	시설수	교부액	시설수	교부액	시설수	교부액	시설수	교부액	시설수
전체	1,719,981	36	4,403,363	303	150,000	11	237,000	237	87,395	57	6,597,739	644
서울	148,785	3	900,000	63	45,000	3	61,000	61	24,000	16	1,178,785	146
부산	-	-	270,000	18	30,000	2	6,000	6	4,500	3	310,500	29
대구	49,595	1	210,000	14	-	-	12,000	12	7,895	4	279,490	31
인천	-	-	120,000	8	-	-	9,000	9	3,000	2	132,000	19
광주	-	-	180,000	12	-	-	6,000	6	-	-	186,000	18
대전	-	-	75,000	5	-	-	4,000	4	-	-	79,000	9
울산	-	-	30,000	2	-	-	-	-	1,500	1	31,500	3
경기	95,745	3	653,363	49	30,000	3	47,000	47	16,500	11	842,608	113
강원	99,190	2	240,000	16	-	-	12,000	12	4,500	3	355,690	33
충북	99,190	2	195,000	13	15,000	1	13,000	13	1,500	1	323,690	30
충남	285,171	6	270,000	18	15,000	1	13,000	13	7,500	5	590,671	43
전북	148,785	3	285,000	19	-	-	8,000	8	1,500	1	443,285	31
전남	347,165	7	300,000	20	-	-	4,000	4	1,500	1	652,665	32
경북	198,380	4	240,000	16	-	-	12,000	12	3,000	2	453,380	34
경남	148,785	3	300,000	20	15,000	1	20,000	20	7,500	5	491,285	49
제주	99,190	2	135,000	10	-	-	10,000	10	3,000	2	247,190	24

자료: 보건복지부(2012). 내부자료.

지원사업별로 보면, 증개축비는 전체 예산의 20.1%인 3억 4천 만원이 전남에

배정되었고, 16.6%에 해당하는 2억 8천만원은 충남지역에 지원되었다. 시설수도 전남 7개소, 충남 6개소로 두 지역이 1/3을 차지한다. 개보수비도 어린이집이 많은 서울이 9천만원을 지원받아 전체 예산 중 20.4%를 차지하고, 경기 6억 5천만원, 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이다. 대전과 울산이 지원 규모가 가장 작다. 장비비와 장애아보육 장비비도 마찬가지로 보육 아동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지원 규모가 크다.

2. 기능보강비 지원 실태 및 요구

국공립어린이집 517개소와 법인어린이집 20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실태 및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능보강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증개축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34.8%가 실시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과 대도시가 35% 이상으로 중소도시보다 많고 학교법인이 42.9%로 많다. 학교,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위탁체의 재정여건이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개축 실시 비율이 높고, 개인이나 기타는 20~30% 수준이다.

정원규모별로는 개인위탁 비율이 높은 39인 이하보다는 40인 이상이 30%대로 증개축을 실시한 비율이 높다.

증개축 시 비용 부담은 80.6%가 정부지원금, 58.9%는 어린이집 자부담, 4.4%는 위탁체 지원금이다.

지역별로 보면, 증개축 시 정부지원금이 80% 내외로 큰 차이가 없으나 중소도시가 85.1%로 가장 많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78~79%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자부담은 읍면이 45.5%로 가장 적고, 도시지역은 60%대로 비슷하다.

위탁형태별로도 증개축 시 정부지원금이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55.6%로 절반 정도만 정부지원금으로 증개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부담 비율은 학교법인이 7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위탁이 63.1%, 종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62.5%, 62.2% 순으로 많다. 단체

위탁이 37.5%로 가장 적다.

정원규모에 따라서는 70~80%가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80인 이상의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다. 자부담은 81~99인 이하가 75.7%로 가장 높고, 다음이 40~49인 이하 72.9%이며, 나머지 위탁형태는 50%대이다(표 III-2-1 참조).

〈표 III-2-1〉 증개축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증개축 여부		비용 부담				(수)
	실시	계(수)	자부담	정부지원금	위탁체지원금	기타	
전체	34.8	100.0(517)	58.9	80.6	4.4	2.2	(180)
지역규모							
대도시	36.0	100.0(247)	61.8	78.7	4.5	3.4	(89)
중소도시	30.5	100.0(154)	66.0	85.1	6.4	-	(47)
읍면	37.9	100.0(116)	45.5	79.5	2.3	2.3	(44)
$X^2(df)$	-				-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38.1	100.0(118)	62.2	80.0	6.7	-	(45)
종교법인	37.5	100.0(64)	62.5	79.2	4.2	4.2	(24)
학교법인	42.9	100.0(21)	77.8	55.6	-	-	(9)
단체	34.8	100.0(23)	37.5	100.0	25.0	-	(8)
개인	31.6	100.0(206)	63.1	81.5	-	3.1	(65)
기타	22.2	100.0(9)	50.0	100.0	50.0	-	(2)
시군구직영	35.5	100.0(76)	40.7	81.5	3.7	3.7	(27)
$X^2(df)$	3.0(6)				-		
정원							
39인 이하	28.2	100.0(85)	50.0	75.0	4.2	-	(24)
40~49인 이하	31.0	100.0(71)	72.7	72.7	4.5	-	(22)
50~80인 이하	38.2	100.0(167)	51.5	77.9	4.4	4.4	(68)
81~99인 이하	36.6	100.0(112)	75.7	86.5	2.7	2.7	(37)
100인 이상	35.4	100.0(82)	51.7	89.7	6.9	-	(29)
$X^2(df)$	-				-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조사결과의 일부임.

다음 <표 III-2-2>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보수비 및 장비비 등의 기능보강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최근 3년 간 개보수비를 지원받은 횟수를 조사한 결과, 지원 비율이 53.3%로 절반 정도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일수록 지원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아 대도시 59.5%, 중소도

시 53.6%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읍면지역이 39.7%로 가장 적다.

정원규모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많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는데, 80~99인 이하가 61.6%로 가장 높고, 100인 이상도 58.5%, 50~79인 이하 56% 순으로 많다.

개보수비 지원 시 지원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0.79회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원구간별로는 1회가 46.7%로 가장 많다. 최근 3년 이내에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지침을 세우고 있으나 2회 이상이 33.1%나 된다.

지역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일수록 지원을 많이 받았다. 대도시가 평균 0.92회이고 읍면이 0.53회로 차이가 유의미하다. 한편, 지원횟수별로 보면, 1~2회는 읍면지역이 71.7%, 23.9%로 가장 많고, 3회는 중소도시가 9.8%, 4회 이상은 대도시가 4.8%이다.

정원별로는 정원규모가 클수록 유의미하게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회는 정원규모가 적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고, 2회는 반대로 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높다. 3회는 40~49인과 80인 이상이 10%대를 나타내며, 4회 이상은 100인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이 4.2%를 차지한다.

〈표 III-2-2〉 기능보강비 지원 횟수: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지원 여부		정부 지원 횟수						평균
	지원	계(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전체	53.3	100.0(516)	66.9	23.3	7.3	2.5	100.0(275)	0.79	
지역									
대도시	59.5	100.0(247)	66.0	22.4	6.8	4.8	100.0(147)	0.92 ^a	
중소도시	53.6	100.0(153)	65.9	24.4	9.8	-	100.0(82)	0.77 ^a	
읍면	39.7	100.0(116)	71.7	23.9	4.3	-	100.0(46)	0.53 ^b	
X ² (df)/F	12.5(2)**							6.9**	
정원									
39인 이하	42.4	100.0(85)	75.0	19.4	2.8	2.8	100.0(36)	0.56 ^b	
40~49인	40.8	100.0(71)	75.9	10.3	10.3	3.4	100.0(29)	0.58 ^b	
50~79인	56.0	100.0(166)	68.8	25.8	4.3	1.1	100.0(93)	0.78 ^{ab}	
80~99인	61.6	100.0(112)	60.9	26.1	10.1	2.9	100.0(69)	0.98 ^a	
100인 이상	58.5	100.0(82)	60.4	25.0	10.4	4.2	100.0(48)	0.95 ^a	
X ² (df)/F	13.0(4)*							3.9**	

* p < .05, ** p < .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를 의미함.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조사결과의 일부임.

즉,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1회 정도는 기능보강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정원이 큰 어린이집에 지원이 더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법인어린이집의 증개축비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III-2-3>과 같이, 법인어린이집 7.8% 정도만 증개축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일수록 지원 비율이 낮아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1.7%이고 읍면지역이 15.7%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법인어린이집이 읍면지역 설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원규모별로는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150인 이상이 지원을 받았다는 비율이 1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79인 이하가 10.8%이며, 나머지 정원규모는 10% 미만이다.

증개축비 지원 시 지원횟수는 1회가 87.5%로 많고, 2회 이상이 12.6%로 대부분 1회 정도만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3> 증개축비 지원 횟수: 법인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증개축 지원여부		지원 횟수			
	지원	계(수)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전체	7.8	100.0(206)	87.5	6.3	6.3	100.0(16)
지역						
대도시	1.7	100.0(58)	-	100.0	-	100.0(1)
중소도시	1.7	100.0(59)	100.0	-	-	100.0(1)
읍면	15.7	100.0(89)	92.9	-	7.1	100.0(14)
정원						
49인 이하	6.2	100.0(32)	100.0	-	-	100.0(2)
50~79인	10.8	100.0(37)	100.0	-	-	100.0(4)
80~99인	5.1	100.0(59)	66.7	-	33.3	100.0(3)
100~149	7.7	100.0(52)	75.0	25.0	-	100.0(4)
150인 이상	11.5	100.0(26)	100.0	-	-	100.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표 III-2-4>와 같이 법인어린이집의 개보수비 지원 여부 및 횟수를 조사한 결과, 개보수비를 지원받았다는 비율은 30.6%로 약 1/3 정도를 차지한다. 읍면 지역일수록, 정원규모가 클수록 개보수비 지원 비율이 높다.

개보수비 지원 시 지원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가 79.4%로 많고, 2회 이상은 10% 미만 수준이다. 법인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 내 지원받은 시설은

재지원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2회 이상이 20.5%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회 지원이 86.7%로 많고, 읍면지역이 비슷한 수준인 83.3%이다. 2회 이상은 중소도시가 많다. 정원규모별로 보면, 1회는 정원규모가 작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다.

<표 III-2-4> 개보수비 지원 횟수: 법인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지원 여부		지원 횟수				
	지원	계(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수)
전체	30.6	100.0(206)	79.4	7.9	6.3	6.3	100.0(63)
지역							
대도시	25.9	100.0(58)	86.7	6.7	6.7	-	100.0(15)
중소도시	30.5	100.0(59)	66.7	11.1	-	22.2	100.0(18)
읍면	33.7	100.0(89)	83.3	6.7	10.0	-	100.0(30)
X ² (df)	1.02(2)				-		
정원							
49인 이하	28.1	100.0(32)	100.0	-	-	-	100.0(9)
40~79인	24.3	100.0(37)	88.9	11.1	-	-	100.0(9)
50~99인	23.7	100.0(59)	71.4	14.3	7.1	7.1	100.0(14)
100~149	40.4	100.0(52)	76.2	4.8	14.3	4.8	100.0(21)
150인 이상	38.5	100.0(26)	70.0	10.0	-	20.0	100.0(10)
X ² (df)	5.2(4)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2) 기능보강비 지원금

다음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액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III-2-5>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조사결과, 지원금이 1회 평균 2,134.1만원으로 1,501~3,000만원이 39.8%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501~1,000만원 14%, 200만원 이하가 13.6%로 비슷한 수준이다. 개보수비 지원단가 중 장비비는 200만원, 개보수비는 3,00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와 1,000~1,500만원, 1,501~3,000만원대의 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보면, 200만원 이하와 1,501만원 이상은 읍면지역의 지원 비율이 높다. 반면에 대도시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 내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높다.

정원별로는 200만원 이하의 정원이 적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고 1,500만원 이상은 규모가 큰 시설이 주로 지원받고 있다. 이는 증개축비나 개보수비는 면적

에 따라 지원단가가 차등 지원되기 때문이다.

〈표 III-2-5〉 기능보강비 지원 금액: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만원

구분	200 이하	201~ 500	501~ 1,000	1,001~ 1,500	1,501~ 3,000	3,001 만원이상	계(수)	평균
전체	13.6	12.1	14.0	11.4	39.8	9.1	100.0(264)	2,134.1
지역규모								
대도시	12.6	10.5	15.4	13.3	39.9	8.4	100.0(143)	2,318.7
중소도시	14.5	15.8	14.5	7.9	38.2	9.2	100.0(76)	1,858.7
읍면	15.6	11.1	8.9	11.1	42.2	11.1	100.0(45)	2,013.8
$X^2(df)$			4.2(10)					0.7
정원								
39인 이하	27.8	11.1	13.9	13.9	27.8	5.6	100.0(36)	1,471.6 ^b
40~49인	17.9	10.7	21.4	7.1	28.6	14.3	100.0(28)	1,826.2 ^b
50~79인	14.8	6.8	11.4	10.2	48.9	8.0	100.0(88)	2,214.1 ^{ab}
80~99인	7.5	20.9	16.4	10.4	37.3	7.5	100.0(67)	1,818.1 ^b
100인 이상	6.7	11.1	11.1	15.6	42.2	13.3	100.0(45)	3,170.0 ^a
$X^2(df)$			-					2.2 [#]

p < .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를 의미함.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조사결과의 일부임.

〈표 III-2-6〉 개보수비 지원 금액: 법인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만원

구분	200 이하	501~ 1,000	1,001~ 1,500	1,501~ 3,000	3,001 만원이상	계(수)	평균
전체	3.2	4.8	1.6	85.7	4.8	100.0(63)	4,377.4
지역							
대도시	6.7	6.7	-	86.7	-	100.0(15)	600.0
중소도시	5.6	5.6	5.6	83.3	-	100.0(18)	3,300.0
읍면	-	3.3	-	86.7	10.0	100.0(30)	5,678.5
F							3.1
정원							
49인 이하	11.1	-	-	77.8	11.1	100.0(9)	6,459.5
50~79인	-	-	-	88.9	11.1	100.0(9)	6,959.4
80~99인	-	-	-	92.9	7.1	100.0(14)	1,987.5
100~149	4.8	9.5	-	85.7	-	100.0(21)	2,716.7
150인 이상	-	10.0	10.0	80.0	-	100.0(10)	7,379.8
F							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한편, 법인어린이집의 개보수비 지원 금액은 평균 4,377.4만원으로 앞서 살펴본 국공립어린이집보다 2,000만원 정도 더 많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일수록 지원금이 많아 5,678.6만원이고, 대도시가 600만원으로 8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앞서서도 설명하듯이 읍면지역에 법인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지원금이나 지원 비율이 높은 것이다. 정원규모별로는 150인 이상이 7,379.8만원으로 가장 많고, 80~99인이 1,987.5만원으로 가장 적다.

지원금 분포별로 보면, 1,501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85.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개보수비 지원단가가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역이나 정원별로도 1,501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3) 기능보강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기능보강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표 III-2-7>과 같이, 개원한 지 일정기간 이상된 어린이집 순으로 지원한다는 비율이 36.6%로 가장 많고,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긴급상황 발생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비율도 22.8%로 높다. 기능보강비 지원이 어린이집의 안전성이나 시급성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정기준 없이 담당공무원이 결정한다는 비율도 13%나 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있도록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일정기간 이상된 어린이집 순으로 지원한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50%이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30%대이다. 다음으로 개원한지 일정기간 이상된 어린이집은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많다. 반면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의 시급성으로 인한 지원은 도시일수록 지원 비율이 높다. 중소도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이나 석면안전관리법 등의 관련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 우선이 18.2%로 타 지역보다 3배 이상 많다.

정원규모별로도 일정기간 이상된 어린이집이 30~40%대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자연재해천재지변, 긴급상황 발생한 어린이집이 20%를 차지한다. 선정기준없이 담당공무원이 결정한다는 의견은 40~49인 이하가 18.3%로 많고, 39인 이하나 100인상도 15% 정도로 많다. 관련법 적용대상 어린이집 우선은 100인 이상이 13.4%로 100인 이하 어린이집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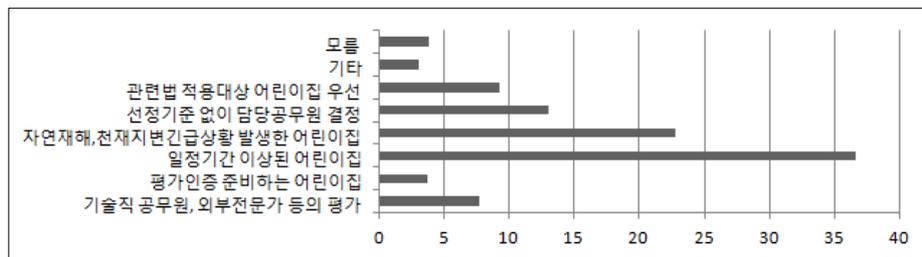
〈표 III-2-7〉 기능보강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기술직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의 평가	평가인증 준비하는 어린이집	일정기간 이상된 어린이집	자연재해, 천재지변 긴급상황 발생한 어린이집	선정기준 없이 담당공무원 결정	관련법 적용대상 어린이집 우선	기타	모름	계(수)
전체	7.7	3.7	36.6	22.8	13.0	9.3	3.1	3.9	100.0(514)
지역규모									
대도시	9.3	4.0	33.2	26.3	13.8	5.7	3.6	4.0	100.0(245)
중소도시	5.8	3.2	31.8	21.4	13.6	18.2	3.2	2.6	100.0(153)
읍면	6.9	3.4	50.0	17.2	10.3	5.2	1.7	5.2	100.0(116)
$\chi^2(df)$				33.9(14)**					
정원									
39인 이하	8.2	3.5	32.9	21.2	16.5	8.2	5.9	3.5	100.0(84)
40~49	4.2	2.8	40.8	21.1	18.3	7.0	2.8	2.8	100.0(71)
50~80	10.1	3.9	37.1	24.7	8.4	8.4	1.7	5.6	100.0(177)
81~99	8.9	3.0	37.6	22.8	11.9	9.9	3.0	3.0	100.0(101)
100인 이상	3.7	4.9	34.1	22.0	15.9	13.4	3.7	2.4	100.0(81)
$\chi^2(df)$				-					

** $p < .01$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조사결과와 일부임.



[그림 III-2-1] 기능보강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4) 개보수비 부담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2011년 한 해동안 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당 연평균 1,22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부담액 구간별로는 500~1,000만원 미만이 28%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0

만원 미만인 21.9%, 1,000~1,500만원 18.0%, 1,50~2,000만원이 15.1% 순이다. 운영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2.7%이다.

〈표 III-2-8〉 개보수비 어린이집 부담액: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만원

구분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1500만원 미만	1500~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없음	계(수)	평균
전체	21.9	28.0	18.0	15.1	4.3	12.7	100.0(511)	1,225.5
지역규모								
대도시	27.0	15.6	17.2	4.9	15.6	19.7	100.0(244)	1,175.9
중소도시	28.9	21.7	14.5	5.9	9.2	19.7	100.0(152)	1,037.2
농어촌	28.7	18.3	11.3	0.9	11.3	29.6	100.0(115)	1,629.2
$X^2(df)/F$			15.4(10)					1.4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22.9	15.3	19.5	5.1	13.6	23.7	100.0(118)	1,548.6
종교법인	23.4	18.8	7.8	7.8	28.1	14.1	100.0(64)	1,506.6
학교법인	57.9	21.1	5.3	-	5.3	10.5	100.0(19)	691.0
단체	30.4	26.1	13.0	-	8.7	21.7	100.0(23)	774.3
개인	30.0	17.2	17.2	4.4	8.9	22.2	100.0(203)	1,152.9
기타	33.3	33.3	22.2	-	11.1	-	100.0(9)	866.6
시군구직영	25.3	18.7	10.7	2.7	12.0	30.7	100.0(75)	982.9
$X^2(df)/F$			-					0.7
정원								
39인 이하	44.7	15.3	10.6	1.2	-	28.2	100.0(85)	434.5 ^c
40~49	28.6	17.1	12.9	5.7	5.7	30.0	100.0(70)	850.0 ^{bc}
50~80	24.4	18.2	17.6	2.8	14.8	22.2	100.0(176)	1,223.0 ^{abc}
81~99	24.0	19.0	14.0	7.0	18.0	18.0	100.0(100)	1,521.1 ^{ab}
100인 이상	22.5	20.0	17.5	6.3	21.3	12.5	100.0(80)	1,836.3 ^a
$X^2(df)/F$			47.0(20) ^{***}					3.0 [*]

* p < .05, ** p < .01,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c를 의미함.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조사결과의 일부임.

지역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읍면지역이 1,629.2만원으로 도시지역보다 약 500만원 정도 많다. 지출분포별로 보면, 500만원 미만은 지역에 상관없이 27~28%대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1,000~1,500만원은 도시지역일수록 운영비를 부담하였다는 비율이 높다. 운영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도시보다 읍면지역이 30% 정도로 높다.

위탁형태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재정여건이 좋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의 운영비 부담액이 1,500만원대로 가장 높고, 학교법인과 단체위탁이

700만원 정도로 가장 적다.

정원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100인 이상이 1,836.3만원으로 가장 많고, 39인 이하가 434.5만원으로 가장 적다. 정원구간별로는 정원이 적을수록 500만원 미만의 운영비 지출 부담 비율이 높다. 반면에 500만원 이상은 정원규모가 클수록 높다.

한편, <표 III-2-9>와 같이 법인어린이집은 1개소당 평균 3,013만원을 개보수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부담액 구간별로 보면, 2,000만원 이상이 34%로 많고, 500만원 미만과 1,000~1,500만원 미만이 각각 20%로 많다. 개보수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11% 정도로 국공립어린이집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보다 대도시나 읍면지역이 어린이집 운영비 규모가 더 크다. 구간별로는 500만원 미만은 읍면일수록 많고, 1,000~1,500만원 사이와 2,000만원 이상은 도시지역일수록 많다. 개보수에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2배 정도 많다.

<표 III-2-9> 개보수비 어린이집 부담액: 법인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만원

구분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미만	1000~1500만원 미만	1500~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없음	계(수)	평균
전체	20.0	11.0	20.0	4.0	34.0	11.0	100.0(100)	3,013.0
지역								
대도시	2.9	8.8	26.5	8.8	44.1	8.8	100.0(34)	3,200.0
중소도시	25.9	22.2	14.8	-	29.6	7.4	100.0(27)	2,406.7
읍면	30.8	5.1	17.9	2.6	28.2	15.4	100.0(39)	3,068.0
F								0.1
정원								
49인 이하	38.9	16.7	16.7	-	22.2	5.6	100.0(18)	1,155.5
50~79인	13.3	6.7	33.3	-	26.7	20.0	100.0(15)	2,900.0
80~99인	30.4	4.3	21.7	8.7	21.7	13.0	100.0(23)	3,726.6
100~149	6.5	6.5	19.4	6.5	51.6	9.7	100.0(31)	2,916.7
150인 이상	15.4	30.8	7.7	-	38.5	7.7	100.0(13)	2,813.0
F								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실태 조사」 결과임.

정원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구간별로는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500~1,000만원 미만은 49인 이하가 50인 이상 어린이집보다 두 배 이상 많다.

4) 개보수 실시 주기

어린이집은 많은 인원이 일정 공간에서 오랜 시간동안 생활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개보수 실시 주기를 조사한 결과, 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실시한다는 비율이 70%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1년에 한번 10.6%, 2~3년에 한번은 7.5%, 5.8%로 10% 미만이다. 개보수를 안한다는 응답도 4.3%나 된다.

〈표 III-2-10〉 개보수 실시 주기: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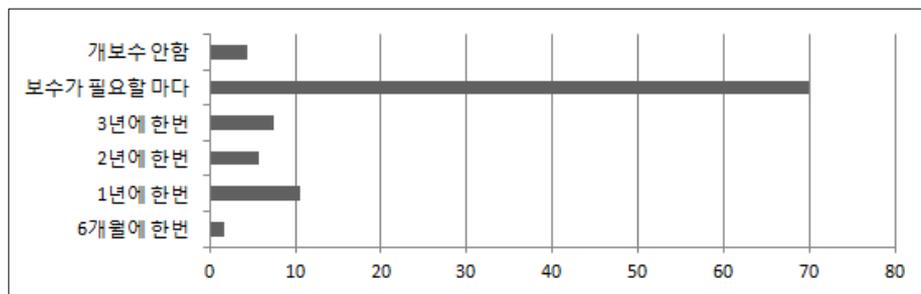
구분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개보수 안함	계(수)
전체	1.7	10.6	5.8	7.5	70.0	4.3	100.0(514)
지역규모							
대도시	2.4	10.5	7.3	7.3	70.9	1.6	100.0(245)
중소도시	0.6	11.0	2.6	7.8	72.7	5.2	100.0(153)
농어촌	1.7	10.3	6.9	7.8	64.7	8.6	100.0(116)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	8.5	9.3	7.6	72.0	2.5	100.0(117)
종교법인	4.7	9.4	3.1	6.3	75.0	1.6	100.0(64)
학교법인	-	14.3	4.8	9.5	66.7	4.8	100.0(20)
단체	-	8.7	8.7	-	78.3	4.3	100.0(23)
개인	1.5	12.6	4.9	7.3	68.0	5.8	100.0(205)
기타	11.1	11.1	22.2	-	55.6	-	100.0(76)
시군구직영	2.6	9.2	2.6	11.8	68.4	5.3	100.0(9)
정원							
39인 이하	-	7.1	5.9	4.7	74.1	8.2	100.0(85)
40~49인	-	12.7	2.8	11.3	66.2	7.0	100.0(70)
50~80인	2.2	11.8	5.1	9.0	68.5	3.4	100.0(177)
81~99인	2.0	11.9	10.9	5.9	66.3	3.0	100.0(101)
100인 이상	3.7	8.5	3.7	6.1	76.8	1.2	100.0(81)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조사결과의 일부임.

지역별로도 전체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개보

수를 한다는 비율이 60~70%를 차지한다. 도시지역이 70%대인데 반해 읍면지역이 64.7%로 5%p 정도 낮다. 한편, 읍면지역일수록 개보수를 안한다는 비율이 높아 읍면이 8.6%이고 대도시가 1.6%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정원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개보수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특히 40~49인은 1년에 한번과 3년에 한번이 10%대로 다른 정원보다 많다. 80~99인도 1년에 한번과 2년에 한번이 1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어린이집 규모가 작을수록 개보수를 안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39인 이하가 8.2%, 40~49인 이하가 7%로 50인 이상이 두 배정도 많다.



[그림 III-2-2] 어린이집 개보수 실시주기: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5) 증개축 공사 이유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증개축 공사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 어린이집 노후화가 59.6%로 많았고, 부대시설 공간 확보 16.9%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는 10% 미만이다.

지역별로도 전반적인 노후화가 가장 많으며, 도시지역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 대도시가 68.2%이고 읍면지역이 28.8%로 20%p 정도 차이가 난다. 부대시설 공간 확보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일수록 높다. 대도시가 19.3%이고 읍면이 11.6%로 7%p 이상 차이가 난다. 반면에 정원 증가를 위한 어린이집 규모 확대나 정원 증가 없는 보육실 면적확대, 장애 영유아 편의시설 설치에 읍면지역일수록 많다. 정원 증가를 위한 어린이집 규모 확대는 읍면지역이 14%이고 대도시가 6.8%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정원별로도 어린이집 노후화가 40~60%대로 가장 많지만 뚜렷한 경향성을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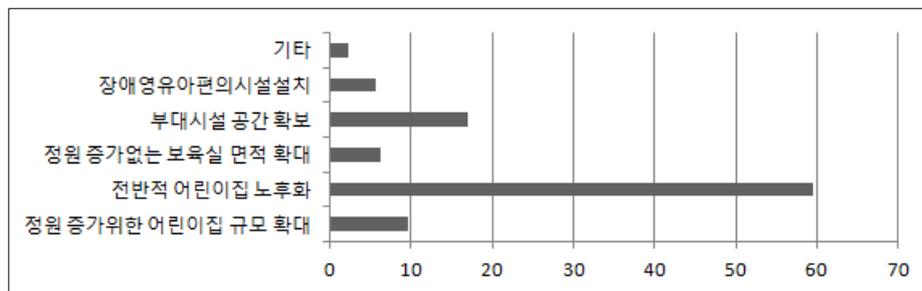
타내지 않는다. 부대 시설 공간확보는 39인 이하가 20.8%로 가장 많고, 80인 이상이 17~18%대로 많다.

〈표 III-2-11〉 증개축 공사 이유: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정원 증가위한 어린이집 규모 확대	전반적 어린이집 노후화	정원 증가없는 보육실 면적 확대	부대시설 공간 확보	장애 영유아 편의시설 설치	기타	계(수)
전체	9.6	59.6	6.2	16.9	5.6	2.2	100.0(178)
지역규모							
대도시	6.8	68.2	2.3	19.3	2.3	1.1	100.0(88)
중소도시	10.6	53.2	6.4	17.0	8.5	4.3	100.0(47)
농어촌	14.0	48.8	14.0	11.6	9.3	2.3	100.0(43)
정원							
39인 이하	4.2	45.8	25.0	20.8	4.2	-	100.0(24)
40~49인	-	71.4	9.5	14.3	4.8	-	100.0(21)
50~80인	14.7	57.4	2.9	14.7	5.9	4.4	100.0(68)
81~99인	5.4	67.6	-	18.9	8.1	-	100.0(37)
100인 이상	14.3	57.1	3.6	17.9	3.6	3.6	100.0(28)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조사결과의 일부임.



[그림 III-2-3] 증개축 공사 이유: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3.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시 문제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환경개선 용자금의 지원한도액이나 이자율에 대해 걱정하지 않다는 의

견이 전반적이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이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한도액은 환경개선비가 시설당 최대 2천만원, 시설이전 1억원이다. 그러나 정원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시설이전비나 환경개선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교재교구비와 같이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한도액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개선 용자지원 시 이율은 2012년 2/4분기 기준 3.55%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시중 은행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까다로운 신청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용자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율을 은행금리보다 크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외에도 용자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를 구비하여 시도에 제출해도 은행에서 용자지원에 필요한 담보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동일한 신청절차를 반복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자 지원을 받는 것보다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정책 시사점

최근 5년간 중앙 정부의 기능보강비 지원 현황과 정부지원시설의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지원 실태 및 요구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시설의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보강 지원사업 예산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능보강비 지원사업 총 예산은 2012년 기준 11,86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정도 삭감되었다. 2008년 24,039백만원에서 2010년 9,438백만원까지 삭감되었다가 다시 증액되는 등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을 위하여 기능보강비 지원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실적 위주의 사업 추진보다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2012년 기준 사업량은 948건으로 2011년보다 다소 줄었다. 2008년 926건에서 2010년 667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사업예산에 따라 사업량의 변동 폭이 크다.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1년, 2012년은 사업량은 비슷한 수준이나 예산규모는 절반 수준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보다

단가가 낮은 공동주택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기능보강지원 사업은 보육환경이 낙후되고,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어린이집 확충 총 예산 중 23.3%인 1,179,286천원이 경기도에 지원되었다. 교부시설수도 경기지역이 28개소로 가장 많고, 강원과 서울이 10개소이며, 나머지 지역은 10개소 미만이었다. 이 외에도 증개축 공사 이유가 전반적 어린이집 노후화가 59.6%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가 68.2%, 중소도시 53.2%, 읍면지역 48.8%로 도시지역일수록 높아 차이를 보였다.

넷째, 기능보강비 지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비율이 53.3%로 절반 정도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지원 횟수는 평균 0.79회로 1회가 46.7%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이내에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세우고 있으나 2회 이상이 33.1%나 되었다. 법인어린이집 증개축비 지원 비율이 7.9%로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낮았다.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개원한 지 일정기간 이상된 어린이집 순으로 지원이 36.6%,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긴급상황 발생 어린이집 지원 22.8%이나 선정기준 없이 담당공무원이 결정한다는 비율도 13%나 되었다.

다섯째, 기능보강비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개보수를 위해 1개소당 연평균 1,225.5만원을 자체 부담하였고, 법인어린이집은 평균 3,013만원을 지출하여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꽤 크다.

여섯째, 민간가정어린이집 용자지원 한도액을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이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신청절차를 용자지원 담당 은행과 통일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심층면담에서 일률적으로 용자지원 최대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정원규모에 따라 최대한도액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개선 용자지원 이율도 시중 은행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시도와 은행의 용자지원 신청절차를 번거롭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도에서 용자지원 신청자격을 얻어도 은행에서 담보나 관련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정부의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IV.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

제4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정부지원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비, 장비비 등 환경개선비 지원 시 16개 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원 기준을 살펴보고, 정부지원 및 용자금 지원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시도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

가. 어린이집 확충 지원 기준

현재 중앙 정부 차원의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몇 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기능보강비 지원 시 이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시도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시도가 정부지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지역을 선정하고 있었다.

16개 시도 중 2개 시도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리모델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기존시설 지리적 이용 불편,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역 선정은 중앙에서 현장 실사 후 최종 내시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나. 증개축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시설 증개축비 지원 시 시도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16개 시도 중 3개 시도로 그 기준을 살펴보면 <표 IV-1-1>과 같다.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노후화 정도, 예산지원 여부이다.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시급성 및 시설유형, 평가인증, 추천순위, 환경조

건, 재정자립도 등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세부기준별로 보면, 노후화 정도가 심할수록 점수 배점이 높다. 지원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 3년간 정부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B지역은 지원받은 시설에도 가점을 주고 있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시설유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수보육 운영 시 가점을 주고 있다. 평가인증은 평가인증 통과여부에 따라 점수 배점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도의 추천순위를 적용하거나 농어촌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시도가 있으며 재정자립도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 환경개선비 및 장비비 지원기준

16개 시도 중 환경개선비 및 장비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7개 시도의 기준을 <표 IV-1-2>에 제시하였다.

표와 같이, 7개 시도 대부분이 예산지원, 평가인증, 노후화 정도, 시급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시설유형이나 자부담 비율, 추천순위, 환경조건, 행정처분 등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도별로 최소 4개에서 8개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점도 지역에 따라 33점에서 100점까지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시도가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원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거나 지원 받은 시기에 따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인증은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점수를 주거나 평가인증 점수를 구간별로 나누고 점수를 차등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노후화 정도는 건축년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최대 20년에서 2년 전까지 구간을 나누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시급성은 안전성 및 재난대비 및 건물누수, 보육환경 보강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주고 있다.

각 세부기준 별 배점을 보면, A지역은 100점 만점에 시급성을 70점 배점하였고, 노후화 정도는 20점, 나머지 기준은 10점 정도이다. B지역과 C지역은 세부기준이 많아 각 기준별로 5~20점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즉, 각 시도에서 환경개선비 및 장비비 지원 시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1〉 시도 정부지원시설 증개축 선정기준

구분	시급성,공간확보	노후화정도	지원 여부	시설유형	평가인증	자부담	추진순위	환경조건	행정처분	시군안배	자립도
A (60)		*건축년도 -80년이전 건축 10점 -90년이전 건축 8점 -90년이후 건축 6점 -신규 8점	-미지원시설 10점 -10.11.12년 지원 -10점				-1순위 20점 -2순위이하 10점	-농촌 10점			-20이하 10점 -25이하 8점 -25초과 6점
B (33)	-협소정도 8~3점 -증원증축 0점	-노후화정도 10~5점	-미지원 5점 -기지원 2점	-국공립 5점 -법인 3점 -법인 외 1점	-평가인증5점 -미인증 0점	-부담 3점 -미부담 0점			-위반시 10점		-낮은 곳부터 5점4점3점, 2점1점
C	-특별사정 3점 (안전건단, 자연재해)	*건축년도 -20년이상 5점 -15~20년 4점 -10~15년 3점 -5~9년 2점 -2~5년 1점	-미지원 2점 -기지원 0점	-투수보육 실시 2점 -투수보육 미실시 0점 -국공립 2점 -이외 0점	-평가인증3점 -미인증 0점		-1순위 5점 -1순위외 0점	-농어촌 5점 -그 외 0점		-500개소이상 3점 -100개소이상 2점 -50개소미만 1점	

주: 시·도 요청으로 시도명 미 표기함. ()괄호 숫자는 총점을 의미함.
자료: 각 시도(2012) 내부자료

〈표 IV-1-2〉 시·도 정부지원시설 환경개선비 및 장비비 지원 선정기준

구분	시급성 및 기타	노후	예산지원	시설유형	평가인증	자부담	추천순위	환경조건	행정처분	정원	자립도
A (100)	-건물누수, 안전성 30점 -보육환경 보강 30점 -개선이행 대장 10점	-82~01년 20점 -83~02년 15점 -83~02년 10점	-개보수비 미지원 10점 (최대 5년 107년 이후)	-국공립 시설 5점 -특수시설 5점 (영어, 장애)	-인증완료 95점 이상 10점 90~94점 8점 85~89점 6점 80~84점 5점 75~79점 4점 74점 이하 3점 -진행중 5점 -미신청 5점 -재인증 완료 (가점 45점)	-자부담 0점 10점 (1백만원 이하, 최대 10점) -비부담 0점 0~10% 미만 2점 10~20% 미만 3점 20~30% 미만 4점 30% 이상 5~6순위 이후 0점	*구군 추천순위 -1순위 10점 -2순위 8점 -3순위 6점 -4순위 4점 -5순위 2점 -30% 이상 5~6순위 이후 0점		-자격취소, 운영정지 -20점 -자격정지, 보조금환수 -10점 -시정명령, 민원발생 -5점		
B (50)		-06~05년 2점 -04~03년 3점 -02~01년 4점 -00~99년 5점 -98~97년 6점 -96~95년 7점 -94~93년 8점 -92~91년 9점 -90년 이전 10점	-2008년 1점 -2007년 2점 -2006년 3점 -2005년 이전 5점								
C (100)	-안전성, 재난대비 및 장애아 보육실 확보 20점 -화장실, 식당, 강당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 10점 -보육수요 증가 등에 따른 보육실 확보 5점	-15년(97년 이전) 이상 30점 -12년 이상~15년 20점 -8년 이상~11년 15점 -5년 이상~7년 10점 -4년(08년부터) 5점	-5년 이내 지원 없음 20점 (2008년 이후) -5년 이내 지원 10점 -지원시 10점 -영아권담합장애 통합시설 7점 -해당 없음 3점	* 장애 및 영아 권담 시설 -장애권담시설 10점 -영아권담장애 통합시설 7점 -해당 없음 3점	-평가인증 통과시설 10점			* 녹아출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다문화지역 - 해당지역 10점 - 해당없음 5점			

(표 IV-1-2 계속)

구분	시급상 및 기타	노후	예산지원	시설유형	평가인증	자부담	추진순위	환경조건	행정처분	정원	자리도
D (100)		-5년 미만 5점 -5년~10년 미만 10점 -10년 이상 15점 -20년 이상 20점	-5년 이전 5점 -5년 경과 10점 -10년 이상 15점 -20년 이상 20점		-인증 20점 -미인증 0점				-운영정지산단 0점 -시정 보조금회수 5점 -해당없음 20점	-50인 이하 10점 -50~100인 15점 -100인 이상 20점	
E (50)			-12년 지원 10점 감점		- 인증 10점		-1순위 20점 -2순위이하 10점	- 농촌지역 10점		*정원충족율 -90%이상 10점 -89~70% 8점 -69% 이하 6점	
F (33)	-협소 정도 8~3점 -응원 증축 0점	-노후화 정도 10~5점	-미 지원 5점 -기 지원 2점	-국공립 5점 -법인 3점 -법인 외 1점	-평가인증 5점 -미인증 0점	-부담 3점 -미부담 0점			-위반 시 -10점		-낮은 곳 부터 543,21 점
G	-특별사정 3점 (안전진단, 자연재해)	건축년도 -20년 이상 5점 -15~20년 4점 -10~15년 3점 -5~9년 2점 -2~5년 1점	-미 지원 2점 -기 지원 0점		-평가인증 3점 -미인증 0점		-1순위 5점 -1순위 외 0점	-읍면 5점 -동지역 2점 -500개소 이상 5점 -100개소 이상 4점 -50개소 이상 3점 -50개소 미만 2점			

주: 사.도 요청으로 시도명 미 표기함. ()괄호 숫자는 총점을 의미함.
자료: 각 시도(2012). 내부자료

2.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의 적절성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담당자 총 186명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장비비,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적절성

<표 IV-2-1>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역 선정기준으로 적절한 기준에 대해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이다.

1순위는 보육 수요가 44.6%로 가장 많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 지역적 특성, 부지 확보, 재정자주도는 모두 10~16%대로 비슷한 수준이다. 2순위에서는 농산어촌이나 저소득밀집지역, 다문화지역, 산업단지 등의 지역적 특성을 지원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4.7%로 많았고, 보육수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 부지 확보, 재정자주도 등은 15~20% 사이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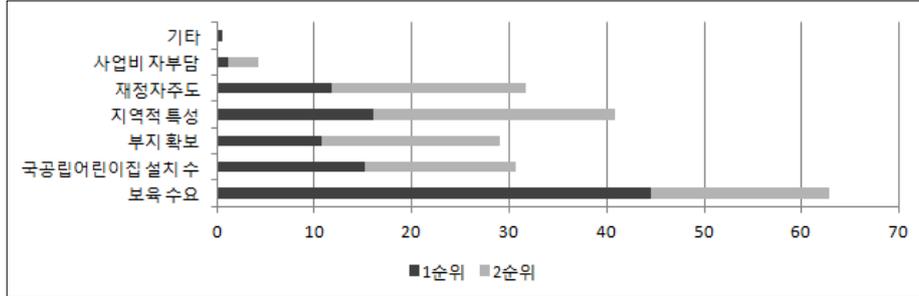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선정기준으로 보육 수요가 가장 적절하며,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 재정자주도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 등이 선정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IV-2-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선정기준의 적절성(1+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 수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수	부지 확보	지역적 특성 ¹⁾	재정 자주도	사업비 자부담	기타	계(수)
1순위	44.6	15.1	10.8	16.1	11.8	1.1	0.5	100.0(186)
2순위	18.3	15.6	18.3	24.7	19.9	3.2	-	100.0(186)
1+2순위	62.9	30.7	29.1	40.8	31.7	4.3	0.5	

주: 1) 지역적 특성으로는 농산어촌, 저소득밀집지역, 다문화지역, 산업단지 등을 말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그림 IV-2-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선정기준의 적절성(1+2순위)

1순위와 2순위를 지역별로 보면, 먼저 1순위에서는 지역별로도 보육수요가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낸다. 보육수요는 중소도시가 52.7%로 타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부지확보나 재정자주도는 도시지역일수록 응답비율이 높다. 부지확보는 대도시가 15.5%로 읍면지역 3.3%보다 5배 이상 높고, 재정자주도는 대도시가 16.9%로 읍면 8.3%보다 두 배이상 많다. 반면에 지역적 특성은 읍면지역일수록 높다. 읍면지역이 33.3%이고,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12.7%, 4.2%로 차이가 있다. 즉,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선정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IV-2-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역 선정기준의 적절성(1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 수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	부지 확보	지역적 특성	재정 자주도	사업비 자부담	기타	계(수)
전체	44.6	15.1	10.8	16.1	11.8	1.1	0.5	100.0(186)
대도시	38.0	22.5	15.5	4.2	16.9	2.8	-	100.0(71)
중소도시	52.7	10.9	12.7	12.7	9.1	-	1.8	100.0(55)
읍면	45.0	10.0	3.3	33.3	8.3	-	-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2순위는 보육 수요가 도시지역일수록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고, 지역적 특성은 읍면지역일수록 높다. 부지확보 기준은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응답비율이 높다. 이는 도시지역이 읍면보다 지가가 높고 유희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2-3〉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역 선정기준의 적절성(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 수요	국공립어 린이집 설치 수	부지 확보	지역적 특성	재정 자주도	사업비 자부담	계(수)
전체	18.3	15.6	18.3	24.7	19.9	3.2	100.0(186)
대도시	28.2	15.5	21.1	14.1	18.3	2.8	100.0(71)
중소도시	12.7	20.0	21.8	29.1	12.7	3.6	100.0(55)
읍면	11.7	11.7	11.7	33.3	28.3	3.3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의 적절성

한편,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충분성, 추가 확충 시 설치지역 및 시설 수 등에 대해 조사한 양미선·임지희(2012)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시군구가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3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어촌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이 20%대로 많았다. 2순위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24.1%로 많지만, 저소득밀집지역이 22.2%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4〉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1+2순위)

단위: %(시군구)

구분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 단지	기타	계(수)
1순위	25.5	3.6	21.8	30.9	10.9	7.3	100.0(55)
2순위	11.1	18.5	22.2	24.1	11.1	13.0	100.0(54)
1+2순위	36.6	22.1	44.0	55.0	22.0	20.3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1순위를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는

산업단지 지역 확충이 20%대로 타 지역보다 높다. 읍면지역은 대·중소도시와 대조적으로 농산어촌 지역 확충이 68.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표 IV-2-5〉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1순위

단위: %(시군구)

구분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산업 단지	기타	계(수)
전체	25.5	3.6	21.8	30.9	10.9	7.3	100.0(55)
대도시	-	4.2	33.3	45.8	8.3	8.3	100.0(24)
중소도시	20.0	-	20.0	33.3	20.0	6.7	100.0(15)
읍면지역	68.8	6.3	6.3	6.3	6.3	6.3	100.0(18)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구소

2순위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저소득 밀집지역이 30%대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대도시는 취약지역, 중소도시는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있다. 읍면지역 2순위는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47.1%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다음은 취약지역이 많다.

〈표 IV-2-6〉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2순위

단위: %(시군구)

구분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산업 단지	기타	계(수)
전체	11.1	18.5	22.2	24.1	11.1	13.0	100.0(54)
대도시	4.5	22.7	31.8	9.1	13.6	18.2	100.0(22)
중소도시	13.3	6.7	33.3	20.0	13.3	13.3	100.0(15)
읍면지역	17.6	23.5	-	47.1	5.9	5.9	100.0(17)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구소

나)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에 대해서는 5점 평균 2.5점으로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2점대이다. 특히 중소도시가 2.3점으로 대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낮다. 구간별로 보면,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이 41.0%로 가장 많다. 35.2%는 대체로 부족하

다는 의견이었고, 매우 부족도 1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에 많다는 의견은 10% 정도로 매우 적다.

지역별로 보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의견은 읍면지역이 60%대로 읍면 지역일수록 높다. 반대로 부족하다는 의견은 대도시일수록 높다. 많다는 의견도 대도시가 20% 가까이 되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2~3배 정도이다.

〈표 IV-2-7〉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매우 부족	대체로 부족	적정	대체로 많은 편	매우 많음	계(수)	평균 (5점)
전체	12.3	35.2	41.0	9.8	1.6	100.0(122)	2.5
대도시	15.9	38.6	27.3	13.6	4.5	100.0(44)	2.5
중소도시	14.3	45.7	34.3	5.7	-	100.0(35)	2.3
읍면지역	7.0	23.3	60.5	9.3	-	100.0(43)	2.7
X ² (df)/F			-				2.0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3) 추가 확충 시 설치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시 설치지역은 저소득밀집지역이 36.2%로 가장 많다. 다음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으로 24.1%를 차지한다. 즉, 저소득밀집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저소득 밀집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순으로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데 반해, 읍면지역은 농산어촌이 46.2%로 지역차를 보인다.

〈표 IV-2-8〉 국공립어린이집 추가확충 시 설치지역

단위: 시군구

구분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	기타	계(수)
전체	13.8	8.6	36.2	24.1	3.4	13.8	100.0(58)
대도시	-	4.2	41.7	33.3	8.3	12.5	100.0(24)
중소도시	9.5	14.3	38.1	23.8	-	14.3	100.0(21)
읍면지역	46.2	7.7	23.1	7.7	-	15.4	100.0(13)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4) 추가 확충 시설수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시군구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추가 확충이 필요한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6.9개소 추가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보면, 1개소와 3개소가 17.2%로 가장 많고, 2개소도 13.8%나 된다. 11개 이상도 13.8%를 차지한다. 1개소는 읍면지역일수록 많다. 읍면지역은 46.2%로 절반 가까이 되고 대도시가 4.2%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2개소도 읍면지역이 30.8%, 3개소도 23.1%를 차지한다. 반면에 4~5개소는 대도시가 29.2%로 많고, 6~10개소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20%대이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평균 9개소로 가장 많고, 읍면지역이 1.8개소로 가장 적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구간별로 보면, 1개소는 읍면지역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다. 읍면지역은 1개소 추가 확충이 46.2%로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2~3개소가 차지한다. 이에 반해 대도시는 4~5개소가 29.2%, 6~10개소 25%로 지자체별로 4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중소도시는 6~10개소가 약 30% 정도로 가장 많고, 11개소 이상도 20% 정도로 대도시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더 필요하다.

〈표 IV-2-9〉 추가 확충 시 설치수

단위: %(시군구), 개소

구분	1개소	2개소	3개소	4~5개소	6~10개소	11개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7.2	13.8	17.2	17.2	20.7	13.8	100.0(58)	6.9
대도시	4.2	8.3	16.7	29.2	25.0	16.7	100.0(24)	7.8a
중소도시	14.3	9.5	14.3	14.3	28.6	19.0	100.0(21)	9.0a
읍면지역	46.2	30.8	23.1	-	-	-	100.0(13)	1.8b
$X^2(df)/F$				-				4.0*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나. 환경개선비 선정기준

1)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의 적절성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에 대해서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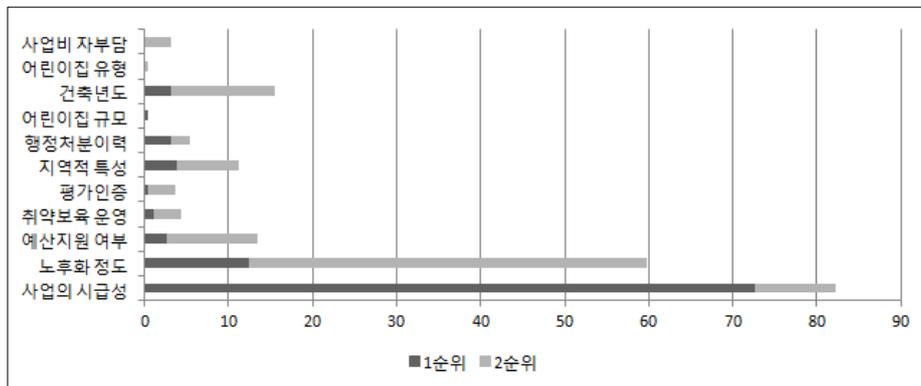
<표 IV-2-10>과 같이, 1순위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이 72.6%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노후화가 12.4%이다. 나머지는 5%미만으로 사업의 시급성이나 노후화를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순위는 노후화 정도가 47.3%로 많고, 예산지원 여부와 건축년도가 각각 10.8%, 12.4%이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가장 적절하며, 다음으로 노후화 정도, 건축년도, 예산지원 기준, 지역적 특성을 들 수 있다.

<표 IV-2-10>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의 적절성(1+2순위)

구분	사업의 시급성	노후화 정도	예산지원 여부	취약보육 운영	평가인증	지역적 특성	행정처분 이력	어린이집 규모	건축년도	어린이집 유형	사업비 자부담	단위: %(명)
												계(수)
1순위	72.6	12.4	2.7	1.1	0.5	3.8	3.2	0.5	3.2	-	-	100.0(186)
2순위	9.7	47.3	10.8	3.2	3.2	7.5	2.2	-	12.4	0.5	3.2	100.0(186)
1+2순위	82.3	59.7	13.5	4.3	3.7	11.3	5.4	0.5	15.6	0.5	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그림 IV-2-2]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의 적절성(1+2순위)

1순위는 사업의 시급성이 전반적으로 60~80%로 많다. 중소도시가 80%로 가장 많고, 읍면지역이 65%로 가장 낮다. 노후화 정도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15%대로 중소도시보다 높다. 지역적 특성은 농어촌이 10%로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높다(표 IV-2-11 참조).

2순위로는 전반적으로 노후화 정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의 시급성, 예산지원 여부, 지역적 특성은 읍면지역이 높은 반면, 건축년도는 대도시가 높다.

〈표 IV-2-11〉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의 적절성(1순위)

단위: %(명)

구분	사업의 시급성	노후화 정도	예산 지원 여부	취약 보육 운영	평가인 증	지역적 특성	행정 처분 이력	어린 이집 규모	건축 년도	계(수)
전체	72.6	12.4	2.7	1.1	0.5	3.8	3.2	0.5	3.2	100.0(186)
대도시	73.2	15.5	2.8	1.4	-	1.4	4.2	1.4	-	100.0(71)
중소도시	80.0	5.5	3.6	1.8	1.8	-	-	-	7.3	100.0(55)
읍면	65.0	15.0	1.7	-	-	10.0	5.0	-	3.3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표 IV-2-12〉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의 적절성(2순위)

단위: %(명)

구분	사업의 시급성	노후화 정도	예산 지원 여부	취약 보육 운영	평가 인 증	지역적 특성	행정 처분 이력	건축 년도	어린 이집 유형	사업비 자부담	계(수)
전체	9.7	47.3	10.8	3.2	3.2	7.5	2.2	12.4	0.5	3.2	100.0(186)
대도시	8.5	50.7	8.5	4.2	1.4	5.6	2.8	15.5	1.4	1.4	100.0(71)
중소도시	7.3	56.4	9.1	3.6	3.6	5.5	-	10.9	-	3.6	100.0(55)
읍면	13.3	35.0	15.0	1.7	5.0	11.7	3.3	10.0	-	5.0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2) 세부기준의 적절성

앞서 살펴본 환경개선비 선정기준 중 노후화 정도, 예산 지원, 평가인증, 사업비 자부담, 어린이집 규모, 지역특성,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IV-2-13 참조).

먼저, 노후화 정도는 건축년도 5년 단위 기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9.5%로 많았다. 건축년도 10년도 31.2%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건축년도 5년 단위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예산지원 기준은 3년 이내가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도 3년 이내가 가장 많다.

평가인증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여부가 62.9%로 많고, 점수 적용은 응답자 중 37.1%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읍면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읍면지역은 평가인증 여부가 80%, 평가인증 점수 20%로 큰 차이를 보인다.

〈표 IV-2-13〉 환경개선비 세부 지원기준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단위: %(명)
					X ² (df)
노후화 정도					
건축년도 3년 단위	18.3	20.0	20.0	19.4	1.1(4)
건축년도 5년 단위	46.5	49.1	53.3	49.5	
건축년도 10년 단위	35.2	30.9	26.7	31.2	
예산 지원					
3년 이내	59.2	58.2	55.0	57.5	0.2(2)
5년 이내	40.8	41.8	45.0	42.5	
평가인증					
평가인증 여부	59.2	49.1	80.0	62.9	12.4(2)**
평가인증 점수	40.8	50.9	20.0	37.1	
사업비 자부담					
자부담 여부	35.7	27.3	53.3	38.9	8.7(2)*
자부담 비율	64.3	72.7	46.7	61.1	
어린이집 규모					
정원 충족률	51.4	74.5	56.7	60.0	7.3(4)
정원	21.4	10.9	18.3	17.3	
현원	27.1	14.5	25.0	22.7	
지역적 특성					
취약지역 해당 여부	57.1	56.4	75.0	62.7	5.8(2)
취약지역별 차등화	42.9	43.6	25.0	37.3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여부	45.7	54.5	66.7	55.1	5.7(2)
행정처분 유형별 차등화	54.3	45.5	33.3	44.9	
계	100.0	100.0	100.0	100.0	
(수)	(70)	(55)	(60)	(18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사업비 자부담 기준은 자부담 비율이 61.1%로 자부담 여부보다 20% 이상 많다.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자부담 비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60~70%로 자부담 여부보다 월등히 많지만 읍면지역은 자부담 여부가 53.3%, 자부담 비율 46.7%이다. 이는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재정 여건이 열

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집 규모 정원충족률이 60%로 정원 17.3%, 현원 22.7%보다 2배 이상 많다. 지역별로도 정원충족률이 50% 이상 많다.

지역적 특성에 대한 세부기준으로는 취약지역 해당 여부가 62.7%이고, 농산 어촌, 저소득밀집지역, 다문화지역, 산업단지 등의 취약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37.3%만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취약지역 여부와 취약지역별 차등화 간의 응답비율 차이가 10% 이내로 크지 않지만 읍면지역은 취약지역 해당 여부 75%, 취약지역별 차등화 25%로 큰 차이를 보인다.

행정처분 이력은 행정처분 여부가 55.1%, 행정처분 형태별 차등화는 44.9%로 행정처분 여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소 높다.

다. 장비비 선정기준의 적절성

다음은 장비비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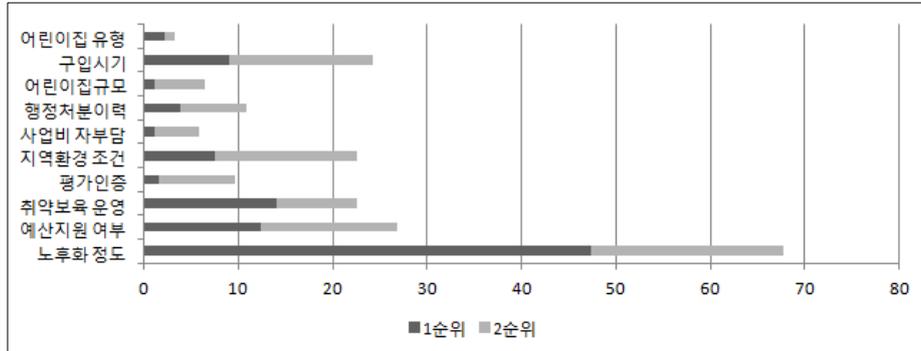
<표 IV-2-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1순위는 노후화가 47.3%로 절반 가까이 되고, 예산지원 여부, 취약보육 운영은 10%이며 나머지 선정기준은 10% 미만 수준이다. 2순위도 노후화 정도가 20.4%로 많고, 지역환경 조건이 15.1%, 구입 시기 15.1%, 예산지원 여부 14.5% 순으로 많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노후화 정도, 예산지원 여부, 구입 시기, 취약보육 운영, 지역환경 조건 등이 장비비 지원 기준으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표 IV-2-14> 장비비 선정기준의 적절성(1+2순위)

구분	노후화 정도	예산 지원 여부	취약 보육 운영	평가 인증	지역 환경 조건	사업비 자부담	행정 처분 이력	어린 이집 규모	구입 시기	어린 이집 유형	계(수)	단위: %(명)
1순위	47.3	12.4	14.0	1.6	7.5	1.1	3.8	1.1	9.1	2.2	100.0(186)	
2순위	20.4	14.5	8.6	8.1	15.1	4.8	7.0	5.4	15.1	1.1	100.0(186)	
1+2순위	67.7	26.9	22.6	9.7	22.6	5.9	10.8	6.5	24.2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그림 IV-2-3] 장비비 선정기준의 적절성(1+2순위)

1순위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정도가 가장 많다. 특히 읍면지역일수록 노후화 정도가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아 읍면지역이 55%이고 대도시가 42.3%로 10%p 이상 차이가 난다. 예산지원 여부나 취약보육 운영, 행정처분 이력은 도시지역의 응답비율이 높다. 특히 취약보육 운영은 대도시가 23.9%로 읍면 3.3%보다 7배 이상 많다. 반면에 지역환경 조건은 읍면지역이 16.7%로 2~3%대의 도시지역보다 높다. 구입시기는 중소도시가 16.4%로 타 지역보다 3배 정도 많다(표 IV-2-15 참조).

2순위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노후화 정도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이 다소 높고 취약보육운영이나 구입시기는 도시지역일수록 응답비율이 높다. 지역환경 조건은 읍면지역일수록 높다. 행정처분 이력은 읍면지역이 10%로 타 지역보다 높다(표 IV-2-16 참조).

<표 IV-2-15> 장비비 선정기준의 적절성(1순위)

단위: %(명)

구분	노후화 정도	예산 지원 여부	취약 보육 운영	평가인 증	지역 환경 조건	사업비 자부담	행정 처분 이력	어린 이집 규모	구입 시기	어린 이집 유형	계(수)
전체	47.3	12.4	14.0	1.6	7.5	1.1	3.8	1.1	9.1	2.2	100.0(186)
대도시	42.3	14.1	23.9	-	2.8	-	5.6	1.4	5.6	4.2	100.0(71)
중소도시	45.5	14.5	12.7	1.8	3.6	-	1.8	1.8	16.4	1.8	100.0(55)
읍면	55.0	8.3	3.3	3.3	16.7	3.3	3.3	-	6.7	-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표 IV-2-16〉 장비비 선정기준의 적절성(2순위)

단위: %(명)

구분	노후화 정도	예산 지원 여부	취약 보육 운영	평가 인증	지역 환경 조건	사업비 자부담	행정 처분 이력	어린이 집 규모	구입 시기	어린이 집 유형	계(수)
전체	20.4	14.5	8.6	8.1	15.1	4.8	7.0	5.4	15.1	1.1	100.0(186)
대도시	18.3	15.5	11.3	8.5	5.6	2.8	7.0	4.2	23.9	2.8	100.0(71)
중소도시	21.8	16.4	10.9	9.1	16.4	7.3	3.6	3.6	10.9	-	100.0(55)
읍면	21.7	11.7	3.3	6.7	25.0	5.0	10.0	8.3	8.3	-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표 IV-2-17〉에 제시한 장비비 세부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지원은 3년 단위가 61.8%로 5년 단위 38.2%보다 20% 이상 많다. 지역별로 보면, 3년 단위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전체 비율과 큰 차이가 없으나 중소도시는 50.9%로 10%p 이상 낮다. 특히 중소도시는 3년과 5년 단위가 차이가 거의 없다.

〈표 IV-2-17〉 장비비 세부기준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X ² (df)
예산지원					
3년 단위	67.6	50.9	65.0	61.8	4.0(2)
5년 단위	32.4	49.1	35.0	38.2	
평가인증					
평가인증 여부	64.8	58.2	86.7	69.9	12.5(2)**
평가인증 점수	35.2	41.8	13.3	30.1	
사업비 자부담					
자부담 여부	43.7	45.5	66.7	51.6	8.1(2)*
자부담 비율	56.3	54.5	33.3	48.4	
어린이집 규모					
정원충족률	52.9	76.4	55.0	60.5	9.3(4)
정원	22.9	7.3	18.3	16.8	
현원	24.3	16.4	26.7	22.7	
지역특성					
취약지역 여부	52.9	63.6	71.7	62.2	4.9(2)
취약지역별 차등화	47.1	36.4	28.3	37.8	
행정처분					
행정처분 여부	44.3	56.4	70.0	56.2	8.7(2)*
행정처분 유형별 차등화	55.7	43.6	30.0	43.8	
계	100.0	100.0	100.0	100.0	
(수)	(70)	(55)	(60)	(18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평가인증 기준은 평가인증 여부가 69.9%, 평가인증 점수가 30.1%로 차이가 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전체 비율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읍면지역은 평가인증 여부가 86.7%, 평가인증 점수 13.3%로 차이도 매우 크다.

사업비 자부담은 자부담 여부가 51.6%, 자부담 비율 48.4%로 차이가 크지 않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자부담 여부가 66.7%, 자부담 비율 33.3%로 자부담 여부가 많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자부담 비율이 다소 높다.

어린이집 규모는 정원충족률이 정원이나 현원보다 월등히 높다, 지역별로도 정원충족률이 가장 많다.

지역특성에 대해서는 전체 비율은 취약지역 여부가 62.2%, 취약지역별 차등화가 37.8%로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도 취약지역 여부가 더 많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여부가 56.2%, 행정처분 유형별 차등화가 43.8%로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행정처분 유형별 차등화가 55.7%로 많지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행정처분 이력이 56.4%, 70%로 행정처분 유형별 차등화보다 많다.

라.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의 적절성

다음은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표 IV-2-18>와 같이, 1순위는 74.2%가 사업의 시급성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기준은 노후화 9.1%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5% 내외이다.

2순위는 노후화 정도가 43%로 절반 가까이 되고, 어린이집 용자금 비율과 행정처분 이력이 12.4%, 12.9%이며, 사업의 시급성과 평가인증이 9%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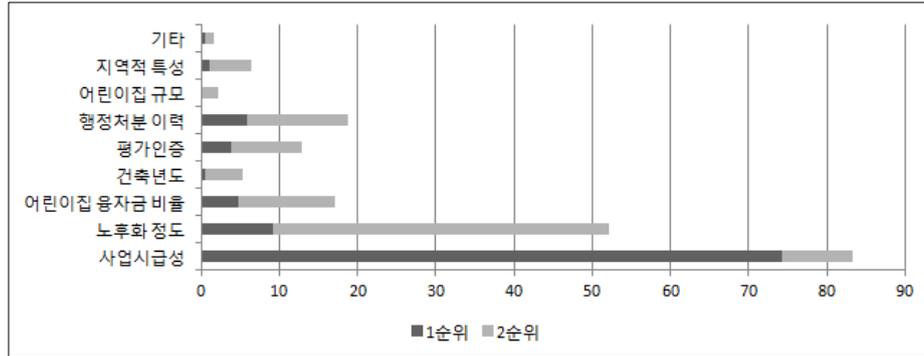
<표 IV-2-18>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의 적절성(1+2순위)

단위: %(명)

구분	사업 시급 성	노후 화 정도	어린이 집 용자금 비율	건축 년도	평가 인증	행정 처분 이력	어린 이집 규모	지역 적 특성	기타	계(수)
1순위	74.2	9.1	4.8	0.5	3.8	5.9	-	1.1	0.5	
2순위	9.1	43.0	12.4	4.8	9.1	12.9	2.2	5.4	1.1	100.0(186)
1+2순위	83.3	52.1	17.2	5.3	12.9	18.8	2.2	6.5	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사·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사업의 시급성이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가장 적절하며, 노후화 정도, 행정처분이력, 어린이집 용자금 비율, 평가인증 등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4]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의 적절성(1+2순위)

1순위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사업의 시급성은 읍면지역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 읍면이 78.3%로 대도시 70.4%보다 약 8%p 정도 높다. 노후화 정도, 어린이집 용자금 비율은 대도시가 타 지역보다 다소 높다.

<표 IV-2-19>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의 적절성(1순위)

단위: %(명)

구분	사업의 시급성	노후화 정도	어린이집 용자금 비율	건축년도	평가인증	행정처분이력	지역적 특성	기타	계(수)
전체	74.2	9.1	4.8	0.5	3.8	5.9	1.1	0.5	100.0(186)
대도시	70.4	11.3	7.0	1.4	2.8	7.0	-	-	100.0(71)
중소도시	74.5	7.3	3.6	-	7.3	7.3	-	-	100.0(55)
읍면	78.3	8.3	3.3	-	1.7	3.3	3.3	1.7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2순위에는 노후화 정도가 30~50%로 가장 많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지역적 특성은 읍면지역이 각각 11.7%로 많고, 평가인증은 중소도시가 14.5%, 어린이집

용자금비율은 대도시가 18.3%로 지역적 차이를 나타낸다.

<표 IV-2-20>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의 적절성(2순위)

단위: %(명)

구분	사업 시급 성	노후 화 정도	어린이 집 용자금 비율	건축 년도	평가 인증	행정 처분 이력	어린 이집 규모	지역 적 특성	기타	계(수)
전체	9.1	43.0	12.4	4.8	9.1	12.9	2.2	5.4	1.1	100.0(186)
대도시	9.9	40.8	18.3	7.0	8.5	12.7	1.4	1.4	-	100.0(71)
중소도시	5.5	38.2	7.3	3.6	14.5	18.2	5.5	3.6	3.6	100.0(55)
읍면	11.7	50.0	10.0	3.3	5.0	8.3	-	11.7	-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환경개선 용자지원 세부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표 IV-2-21>과 같다.

먼저 노후화 정도는 건축년도 5년 이내가 42.5%, 건축년도 10년 이내 31.2% 순이다. 지역별로도 건축년도 5년 이내는 전체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건축년도 3년 이내는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10%p 정도 높고, 건축년도 10년 이내는 반대로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다.

평가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여부가 65.6%, 평가인증 점수 34.4%로 평가인증 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평가인증 여부에 대해 50% 정도이지만, 읍면지역은 81.7%로 30%p 이상 차이가 난다.

어린이집 규모는 정원충족률이 62.2%로 높다. 지역별로도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76.4%로 타 지역보다 다소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다.

지역특성은 취약지역 여부가 60%, 취약지역별 차등화가 40%로 취약지역 여부 기준에 대한 응답이 더 많다. 지역별로도 유사한 응답비율을 나타내지만 특히 읍면지역의 비율이 71.7%로 높다.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 56.2%, 행정처분 유형별 차등화 43.8%로 행정처분 여부가 다소 높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는 행정처분 유형별 차등화가 54.3%로 많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행정처분 여부가 56.4%, 68.3%로 많다.

〈표 IV-2-21〉 환경개선 용자지원 세부기준의 적절성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단위: %(명)
					X ² (df)
노후화 정도					
건축년도 3년 이내	25.4	20.0	33.3	26.3	3.0(4)
건축년도 5년 이내	40.8	47.3	40.0	42.5	
건축년도 10년 이내	33.8	32.7	26.7	31.2	
평가인증					
평가인증 여부	59.2	56.4	81.7	65.6	10.2(2)**
평가인증 접수	40.8	43.6	18.3	34.4	
어린이집 규모					
정원 충족률	55.7	76.4	56.7	62.2	7.0(4)
정원	21.4	10.9	18.3	17.3	
현원	22.9	12.7	25.0	20.5	
지역특성					
취약지역 여부	54.3	54.5	71.7	60.0	5.0(2)
취약지역별 차등화	45.7	45.5	28.3	40.0	
행정처분					
행정처분 여부	45.7	56.4	68.3	56.2	6.7(2)*
행정처분 유형별 차등화	54.3	43.6	31.7	43.8	
계	100.0	100.0	100.0	100.0	
(수)	(70)	(55)	(60)	(18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의견조사」 결과임.

3.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선정기준

가. 주요 변인

<표 IV-3-1>와 같이, 보육사업안내와 앞서 살펴본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준 마련을 위한 변인을 수합하였다.

우선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주요 변인으로 지원 지역의 어린이집 수와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와 영유아보육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으로 지정한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추

가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재산세와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를 보조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지원시설 환경개선비와 장비비와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 지원을 위한 변인으로는 어린이집의 노후도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평가인증률 및 평가인증 점수 등을 선정하였다.

〈표 IV-3-1〉 기능보강비 선정기준

변인	내용	자료출처	자료수준
어린이집 확충 지원			
영유아수	0세-5세 각 세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읍면동
어린이집 공급률	설립유형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읍면동
어린이집 이용률	설립유형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읍면동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지역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읍면동
어린이집 수	설립유형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유치원 수	설립유형별	교과부 교육통계	읍면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지역별 국공립신축, 민간매입, 기존건물 리모델링 개소수	시군구 조사	시군구
재정자주도	지역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계	시군구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	지역별	보건복지부	읍면동
재산세	지역별	행정안전부 세정연감	시군구
환경개선비 지원			
노후도	건축년도	어린이집통합시스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및 점수	신규 및 재인증율, 신규인증 및 재인증 점수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통계.
 행정안전부(2011). 주민등록인구통계, 지방재정통계, 세정연감.
 한국보육진흥원(2012). 평가인증 내부자료.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기준으로 선정된 변인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0~5세 영유아수

0~5세 영유아수는 2011년 기준 총 2,777,209명으로 전체 영유아 중 4세 아동

은 494,38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1세, 3세 아동 순이다. 전체 영유아 중 748,040명 26.9%는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18.1%인 502,766명은 서울, 192,054명 6.9%는 경남에 거주한다. 제주와 울산, 강원은 영유아 수가 8만명 미만으로 특히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영유아의 수가 매우 적다.

〈표 IV-3-2〉 시·도별 영유아수 : 2011

구분	단위: 명						
	소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2,777,209	451,579	470,224	445,437	466,807	494,388	448,774
서울	502,766	84,538	86,961	80,452	83,876	87,332	79,607
부산	156,472	26,295	27,056	24,626	26,083	27,592	24,820
대구	124,198	19,944	20,525	19,721	20,960	22,554	20,494
인천	158,758	25,572	26,934	25,683	26,820	28,358	25,391
광주	87,003	13,494	14,403	13,986	14,668	15,912	14,540
대전	89,215	14,333	14,609	14,242	15,058	16,142	14,831
울산	67,754	11,214	11,512	11,005	11,327	12,026	10,670
경기	748,040	118,257	125,526	120,195	126,944	134,201	122,917
강원	75,635	11,961	12,599	12,112	12,557	13,829	12,577
충북	87,291	14,315	14,821	14,083	14,565	15,528	13,979
충남	123,274	20,191	20,918	19,929	20,805	21,694	19,737
전북	97,233	15,662	16,356	15,484	16,344	17,493	15,894
전남	96,196	15,952	16,393	15,463	15,933	17,014	15,441
경북	136,529	22,960	23,386	21,947	22,673	24,024	21,539
경남	192,054	31,469	32,506	30,953	32,376	34,363	30,387
제주	34,791	5,422	5,719	5,556	5,818	6,326	5,950

자료: 행정안전부(2011). 주민등록인구 통계.

2)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0~5세 영유아 전체 대비 어린이집 공급률은 58.4%, 이용률은 48.6%로 절반 수준이다. 공급률은 2010년 56.7%에서 1.5%p 증가하였고, 이용률은 2010년 46.8%에서 약 2%p 정도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어린이집 공급률은 서울이 2010년에 비해 1.4%p 증가한 48.4% 수준이나 여전히 가장 낮으며, 제주가 87.8%로 가장 높다. 이용률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42.7%로 가장 낮고, 부산, 인천, 경기, 울산 지역도 전반적으로 50%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급률은 5.7%, 이용률은 5.2%로 매우 낮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0%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가장 높고, 대전과 대구가 1.8%, 1.9%로 가장 낮다. 서울, 부산, 강원, 전남, 경남을 제외한 지역 모두 5%

미만이다. 영유아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서울이 가장 높고 대구가 1.6%로 가장 낮다. 서울, 부산, 강원 지역만 5% 이상 수준을 나타낸다(표 IV-3-3 참조).

〈표 IV-3-3〉 시도별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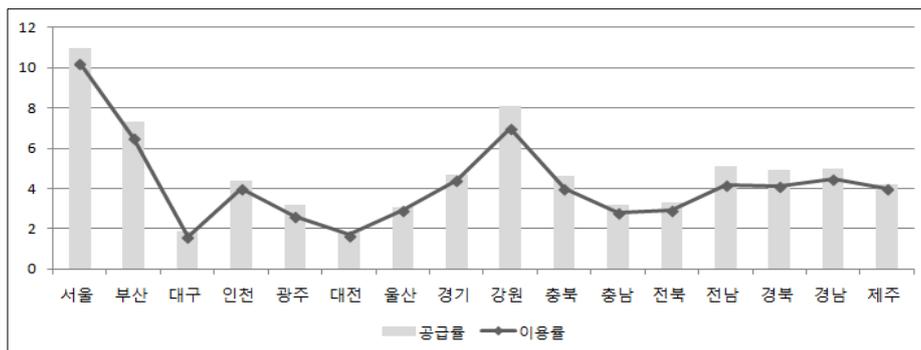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0~5세 영유아수 (a)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b)	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 (d)	현원 (e)	공급률 (d/a)	이용률 (e/a)
전체	2,777,209	1,621,948	1,348,729	58.4	48.6	157,748	143,035	5.7	5.2
서울	502,766	243,440	214,863	48.4	42.7	55,150	51,294	11.0	10.2
부산	156,472	80,583	68,050	51.5	43.5	11,485	10,237	7.3	6.5
대구	124,198	77,218	63,118	62.2	50.8	2,412	2,034	1.9	1.6
인천	158,758	82,245	71,381	51.8	45.0	6,934	6,319	4.4	4.0
광주	87,003	60,943	49,983	70.0	57.4	2,811	2,220	3.2	2.6
대전	89,215	52,821	44,573	59.2	50.0	1,623	1,511	1.8	1.7
울산	67,754	35,621	29,976	52.6	44.2	2,122	1,973	3.1	2.9
경기	748,040	409,956	344,326	54.8	46.0	35,143	32,811	4.7	4.4
강원	75,635	53,498	42,996	70.7	56.8	6,119	5,309	8.1	7.0
충북	87,291	59,175	48,251	67.8	55.3	4,025	3,530	4.6	4.0
충남	123,274	78,245	63,236	63.5	51.3	3,892	3,433	3.2	2.8
전북	97,233	72,700	57,114	74.8	58.7	3,227	2,778	3.3	2.9
전남	96,196	66,655	53,988	69.3	56.1	4,934	4,016	5.1	4.2
경북	136,529	93,839	72,261	68.7	52.9	6,641	5,599	4.9	4.1
경남	192,054	124,478	99,100	64.8	51.6	9,507	8,593	5.0	4.5
제주	34,791	30,540	25,513	87.8	73.3	1,453	1,378	4.2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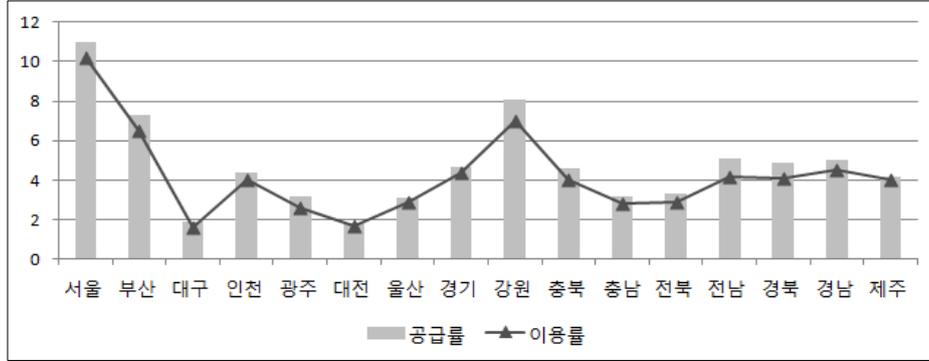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11).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자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V-3-1]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그림 IV-3-2]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3) 정원충족률

다음 <표 IV-3-4>는 전체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정원충족률을 조사한 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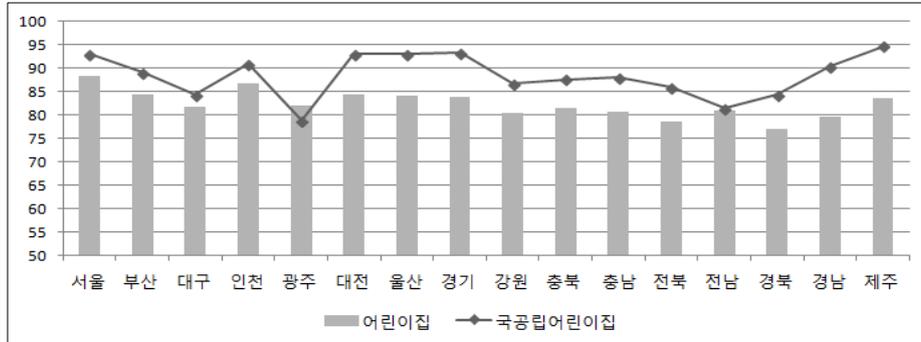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평균 83.2%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8.3%로 가장 높고, 인천 86.8%, 부산 84.4%, 울산 84.2% 순이다. 전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지역으로 특히, 전북과 경북, 경남은 80% 미만 수준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90.7%로 어린이집 전체 정원충족률보다 7%p 정도 높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94.8%로 가장 높고, 광주 79.0%로 가장 낮다.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제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90% 이하이다.

<표 IV-3-4> 시도별 정원충족률: 2011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83.2	88.3	84.4	81.7	86.8	82.0	84.4	84.2	84.0	80.4	81.5	80.8	78.6	81.0	77.0	79.6	83.5
국공립	90.7	93.0	89.1	84.3	91.1	79.0	93.1	93.0	93.4	86.8	87.7	88.2	86.1	81.4	84.3	90.4	94.8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그림 IV-3-3]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가 85.9%로 가장 높고, 농어촌이 78.8%로 농어촌일수록 정원충족률이 낮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90.7%이지만,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92.5%이고 농어촌이 86.7%로 차이가 있다. 법인어린이집은 전체 평균 79.4%이고, 도시지역이 82% 정도로 높다. 민간개인어린이집은 전체 평균이 82%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도시일수록 정원충족률이 높다. 가정어린이집은 84.9%이지만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표 IV-3-5> 지역규모별 정원 대비 현원: 2011

구분	계	단위: 명, %						
		국공립	법인	법인의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정원								
대도시	608,743	80,450	39,462	19,778	327,986	123,143	1,381	16,543
중소도시	606,113	43,599	27,498	16,285	322,147	184,162	1,015	11,407
농어촌	407,092	33,429	75,006	25,645	211,971	56,125	330	4,586
전체	1,621,948	157,748	141,966	61,708	862,104	363,430	32,536	2,726
현원								
대도시	522,894	73,711	32,714	16,634	279,297	106,252	1,128	13,158
중소도시	504,978	40,340	22,742	13,974	263,827	154,630	869	8,596
농어촌	320,857	28,984	57,232	20,068	163,523	47,528	289	3,233
전체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2,286
정원충족률								
대도시	85.9	91.6	82.9	84.1	85.2	86.3	81.7	79.5
중소도시	83.3	92.5	82.7	85.8	81.9	84.0	85.6	75.4
농어촌	78.8	86.7	76.3	78.3	77.1	84.7	87.6	70.5
전체	83.2	90.7	79.4	82.1	82.0	84.9	76.8	83.9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4) 어린이집 수

국공립어린이집은 2011년 기준 2,116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39,842개소 중 5.3%를 차지한다. 2000년 1,295개소에서 2011년 2,116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증가율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민간어린이집은 8,970개소에서 14,134개소로 늘어났고, 가정어린이집은 6,473개소에서 20,722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IV-3-6 참조).

〈표 IV-3-6〉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2000~2011

구분	계	단위: 명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401	74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449	89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5)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보다 시도지역이 많다. 특히 경북 지역이 93개 읍면동으로 가장 많다. 한편,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을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88개 읍면과 2개 동 총 90개 지역이 미설치 지역으로 가장 많다. 이 외에도 경남과 전남이 각각 81개, 78개 지역 순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은 1,960개 지역으로 1,022개 읍면과 938개 동이다(표 IV-3-7 참조).

6) 유치원 수

2012년 기준 유치원 수는 국공립유치원 4,525개소, 사립유치원 4,013개소로 총 8,538개소이다. 전체 유치원 중 23.8%는 경기, 10.1%는 서울, 8.2%인 701개소는 경북에 위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96.3%는 병설유치원이고, 사립유치원 중 80.4%는 개인사립유치원이며 이는 0.4%의 군부대 유치원과 다소 많은 차이가 난다(표 IV-3-8 참조).

〈표 IV-3-7〉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단위: 읍면·동

구분	설치지역						미설치지역					
	어린이집 수			설치지역 수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계	읍면	동	계	읍면	동	계	읍면	동	계	읍면	동
계	39,842	7,009	32,833	3,026	989	2,037	474	440	34	1,960	1,022	938
서울	6,105	-	6,105	422	-	422	2	-	2	34	-	34
부산	1,740	89	1,651	207	5	202	7	-	7	106	2	104
대구	1,561	131	1,430	139	9	130	-	-	-	108	5	103
인천	1,998	27	1,971	136	11	125	10	9	1	65	11	54
광주	1,205	-	1,205	91	-	91	3	-	3	70	-	70
대전	1,599	-	1,599	76	-	76	1	-	1	52	-	52
울산	818	152	666	52	9	43	4	3	1	29	6	23
경기	11,825	1,966	9,859	529	131	398	18	10	8	208	69	139
강원	1,147	347	800	168	94	74	25	25	-	122	80	42
충북	1,133	332	801	124	73	51	32	32	-	117	81	36
충남	1,857	953	904	172	132	40	53	50	3	159	133	26
전북	1,580	257	1,323	177	97	80	64	62	2	199	139	60
전남	1,161	534	627	217	153	64	79	77	2	235	189	46
경북	2,162	885	1,277	238	147	91	93	91	2	221	151	70
경남	3,399	1,229	2,170	236	116	120	82	81	1	209	149	60
제주	552	107	445	42	12	30	1	-	1	26	7	19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표 IV-3-8〉 시도별 유치원 수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소계	단설	병설	소계	법인	종교단체	개인	군부대	기타
전체	8,538	3	4,522	167	4,355	4,013	469	229	3,228	17	70
서울	866	-	155	13	142	711	99	59	528	3	22
부산	369	-	64	7	57	305	42	17	241	1	4
대구	343	-	125	2	123	218	27	13	173	2	3
인천	389	-	137	6	131	252	11	10	228	-	3
광주	278	-	119	6	113	159	16	8	131	-	4
대전	252	-	89	5	84	163	15	4	141	1	2
울산	186	-	76	4	72	110	6	5	97	-	2
경기	2,034	-	1,046	29	1,017	988	67	33	870	2	16
강원	379	1	277	14	263	101	20	12	66	-	3
충북	344	1	255	15	240	88	19	4	65	-	-
충남	534	1	394	14	380	139	26	9	98	1	5
전북	523	-	360	12	348	163	21	8	132	-	2
전남	551	-	441	13	428	110	20	3	86	-	1
경북	701	-	471	9	462	230	53	14	159	3	1
경남	679	-	425	18	407	254	14	30	206	3	1
제주	110	-	88	-	88	22	13	-	7	1	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육통계서비스.

7)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말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최근에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를 많이 사용한다.

16개 시·도 재정자주도는 평균 77.2%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91.5%로 가장 높고, 경기 81.7%, 울산 80.9%, 인천 80.6% 순이다. 서울, 인천, 울산,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로 특히, 광주와 전북, 전남, 제주는 70% 미만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시·도별 재정자주도를 특·광역시별로 살펴보면 서울 89.6%로 전체 평균 79.2%보다 높고, 광주 65.2%로 평균보다 낮다. 이는 서울에 비해 광주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IV-3-9 참조).

〈표 IV-3-9〉 시·도별 재정자주도

시도별	시도별 평균	특별시·광역시	단위: %			
			도	시	군	자치구
전체	77.2	79.2	49.2	68.4	62.9	55.6
서울	91.5	89.6	-	-	-	69.2
부산	75.7	71.7	-	-	67.5	43.7
대구	75.4	70.7	-	-	67.5	41.2
인천	80.6	77.1	-	-	51.3	53.0
광주	69.9	65.2	-	-	-	36.8
대전	76.2	71.8	-	-	-	39.8
울산	80.9	72.2	-	-	65.2	58.5
경기	81.7	-	63.6	72.2	68.4	-
강원	74.1	-	43.4	69.2	67.8	-
충북	73.6	-	47.3	64.3	65.5	-
충남	71.0	-	42.7	66.0	60.4	-
전북	69.3	-	41.1	61.2	60.5	-
전남	66.8	-	34.1	64.8	59.0	-
경북	73.1	-	42.3	67.9	64.9	-
경남	74.5	-	45.1	67.2	63.3	-
제주	68.1	-	67.4	-	-	-

자료: 행정안전부(2011). 지방재정통계 지방예산 현황.

8) 평가인증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신규인증과 재인증율을 살펴보면 <표 IV-3-10>와 같다.

평가인증 신규인증율은 법인어린이집이 103.8%로 가장 높고, 국공립어린이집 93.3%, 민간어린이집 80.7%, 가정어린이집 75.3% 순이다. 재인증율은 법인어린이집이 63.2%, 국공립어린이집 55.6%, 민간어린이집 13.9%, 가정어린이집 7.9%로 신규인증과 재인증 모두 법인어린이집의 인증율이 가장 높다.

시·도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규인증율은 대전이 107.1%로 가장 높고 전남이 77.3%로 가장 낮다. 재인증율은 강원이 69.5%로 평균보다 약 14% 높으며 광주 는 전체 평균보다 약 32%p 낮은 23.3%만 재인증을 받았다(표 IV-3-10 참조).

<표 IV-3-10>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신규인증율

단위: %

구분	신규인증				재인증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
전체	93.3	103.8	75.3	80.7	55.6	63.2	7.9	13.9
서울	92.9	72.1	78.8	85.3	69.3	44.2	13.1	14.3
부산	92.4	115.5	83.1	92.6	67.6	56.0	12.1	13.1
대구	94.9	103.3	86.2	88.7	46.2	81.3	7.4	20.7
인천	96.1	80.0	86.7	96.5	49.5	80.0	8.0	13.0
광주	66.7	110.3	103.9	98.6	23.3	41.1	7.7	11.0
대전	107.1	102.4	78.5	90.3	67.9	80.5	6.7	16.3
울산	100.0	100.0	69.3	77.7	54.8	76.9	15.5	18.4
경기	94.0	101.4	70.2	66.7	43.5	52.8	5.7	6.6
강원	98.8	106.0	69.5	91.5	69.5	76.1	8.5	27.2
충북	84.6	104.6	80.5	81.1	44.2	72.5	3.1	8.7
충남	95.3	101.5	59.7	70.8	26.6	49.3	3.5	11.6
전북	100.0	109.2	97.3	89.9	51.0	69.3	19.1	27.9
전남	77.3	101.7	83.3	81.5	41.3	58.7	10.9	27.8
경북	94.3	102.4	72.7	85.2	48.0	85.9	4.1	17.4
경남	96.2	103.0	66.5	76.4	59.1	55.4	7.0	15.5
제주	104.8	103.9	77.6	86.4	52.4	54.5	2.6	16.2

자료: 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2012. 5. 31일 기준).

다음 <표 IV-3-11>은 신규인증과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를 정리한 표이다.

신규인증 평균 점수는 국공립어린이집 91.1점, 가정어린이집 89점, 법인어린이집 88.3점, 민간어린이집 86.6점으로 국공립어린이집만 90점 이상이며 나머지 어

린이집 유형은 90점 미만이다.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는 모든 어린이집 유형이 90% 이상을 나타낸다. 국공립 어린이집 94.1점으로 가장 높고, 가정어린이집 92점, 법인어린이집 91.6점, 민간 어린이집 91.1점 순이다.

〈표 IV-3-11〉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신규 인증 평가인증 평균점수

단위: 점

구분	신규인증				재인증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
전체	91.1	88.3	89.0	86.6	94.1	91.6	92.0	91.1
서울	90.9	91.0	88.0	85.9	94.5	93.9	92.4	92.2
부산	89.6	89.1	86.2	84.7	92.2	91.0	92.3	90.2
대구	89.8	89.0	87.6	86.6	95.2	91.4	91.7	91.1
인천	92.5	86.6	89.6	86.8	95.1	92.8	93.4	91.4
광주	89.0	87.0	88.2	85.5	93.0	89.4	90.0	87.8
대전	89.8	90.4	88.9	86.1	93.2	92.8	91.5	91.8
울산	93.4	89.9	90.2	87.0	96.3	95.1	92.9	91.6
경기	92.1	89.2	89.6	87.2	95.0	92.2	91.8	90.8
강원	89.9	87.6	89.6	87.0	92.7	91.6	92.2	91.5
충북	92.1	88.5	89.4	87.6	94.0	92.0	90.6	91.3
충남	89.8	88.1	89.8	87.4	92.4	92.4	92.6	91.7
전북	89.8	87.5	89.5	86.4	92.3	91.2	92.3	90.4
전남	88.4	86.6	87.8	85.5	91.4	90.1	89.3	89.8
경북	92.5	90.3	89.7	88.6	93.6	92.3	93.1	91.7
경남	90.5	87.7	88.3	85.9	93.2	91.2	91.8	89.9
제주	93.7	90.3	90.7	89.7	95.2	92.9	90.8	93.6

주: 신규인증 평가인증 평균 점수는 신규인증 일반참여(2005.1기~2011.9기), 신규인증 재참여(2005.1기~2011.7기)를 포함한 32,441개소로 산출(2012. 5. 31 기준).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

4. 정책 시사점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선정기준으로 보육수요, 지역적 특성, 재정자주도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순위는 보육수요가 44.6%로 가장 많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 지역적 특성, 부지확보, 재정자주도는 모두 10~16%대로 비슷한 수준이다. 2순위에서는 농산어촌이나 저소득밀집지역, 다문화지역, 산업단지 등의 지역적 특성을 지원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4.7%로 많았고, 보육수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 부지 확보, 재정자주도는 15~20% 사이였다.

둘째, 환경개선비 선정기준 마련 시 사업의 시급성, 노후화 정도, 건축년도, 예산지원 기준, 지역적 특성의 조건을 고려한다. 1순위는 72.6%가 사업의 시급성이었고, 노후화 정도가 12.4%였다. 2순위는 노후화 정도가 47.3%, 예산지원 여부와 건축년도가 각각 10.8%, 12.4%이었다.

셋째, 장비비 선정기준으로 노후화 정도, 예산지원 여부, 구입시기, 취약보육 운영, 지역환경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순위는 노후화가 47.3%로 절반 가까이 되었고, 예산지원 여부, 취약보육 운영은 10%이며 나머지 선정기준은 10% 미만 수준이었다. 2순위도 노후화 정도가 20.4%로 많고, 지역환경조건 15.4%, 구입시기 15.1%, 예산지원 여부 14.5% 순으로 많았다.

넷째,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으로 사업의 시급성, 노후화 정도, 행정처분이력, 어린이집 용자금 비율, 평가인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1순위는 74.2%가 사업의 시급성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기준은 노후화 9.1%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5% 내외였고, 2순위는 노후화 정도가 43%로 절반 가까이 되고, 어린이집 용자금 비율과 행정처분 이력이 각각 12.4%, 12.9%이며, 사업의 시급성과 평가인증이 9% 대였다.

V.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개선방안

제5장에서는 4장에서 살펴본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 의견조사 결과와 선정기준 관련 변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정부지원시설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의 기능보강비와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와 환경개선 용자지원 사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1.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

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기준을 위한 선정기준은 앞서 살펴본 시도 및 시군구 의견조사 결과와 2012년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준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보육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정원총족률과 지역특성, 국공립어린이집 수, 재정자주도 등을 선정기준으로 최종 채택하였다.

선정기준별 배점은 지역특성을 45점으로 배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와 정원총족률은 각각 20점, 재정자주도 10점, 전년도 실집행률 5점으로 배점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은 다음의 세부기준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되, 지역별(시도, 시군구)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도록 한다.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 저소득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기준표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특성

지역특성 세부기준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산업단지, 군관사지

역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 밀집지역은 임대아파트 단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다수 거주 지역이나 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주택임대아파트 등의 임대아파트 단지, 해당 권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밀집지역을 고려한다. 둘째, 농어촌 지역은 읍면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선정한다. 셋째,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고려한다. 넷째,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지역 군부대 인근(군부대 외곽)에 설치된 관사로서 민간인의 자녀도 입소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경우에 선정한다.

〈표 V-1-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선정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지역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밀집지역(20점) · 농어촌지역(15점) · 산업단지, 군관사지역 등(10점) 	45
국공립 설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20점)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10점)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이상(5점) 	20
정원 충족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90% 이상(20점)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18점)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14점)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12점)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미만(10점) 	20
재정 자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도 30% 미만(10점)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8점) - 재정자립도 40% 이상 50% 미만(6점) - 재정자립도 50% 이상(5점) · 농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도 10% 미만(10점) - 재정자립도 10% 이상 20% 미만(8점) - 재정자립도 20% 이상 30% 미만(6점)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4점) - 재정자립도 40% 이상(3점) 	10
전년도 실집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집행률 80% 이상(5점) · 실집행률 70% 이상 80% 미만(3점) · 실집행률 60% 이상 70% 미만(1점) · 실집행률 60% 미만(0점) 	5

다)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해당 권역 내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라) 지방 재정자주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를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규모별 재정자주도는 <표 V-1-2>와 같다. 전국 전체평균이 77.2%이고 중소도시가 68.4%로 가장 높다.

〈표 V-1-2〉 지역규모별 지방 재정자주도

구분	단위: %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1년도	77.2	49.2	68.4	62.9

마) 전년도 실집행률

전년도 실집행률은 전년도에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을 교부받은 지역일 경우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집행률을 산정하여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2)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앞서 살펴본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준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시설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선정기준도 시도 및 시군구 조사결과와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시급성과 노후도, 정원충족률, 지역특성, 예산지원, 평가인증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으로 하였다. 세부기준별 배점은 증개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기준에 따라 달리 점수를 부여하였다. 공통적으로 시급성과 노후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점하였고 행정처분 이력은 감점 처리하였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선정기준은 다음의 세부기준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되, 지역별(시도, 시군구)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도록 한다(표 V-1-4 참조).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 저소득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기준표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급성

시급성은 건축물 철거, 어린이집 건물·부지가 도로 부지에 편입 등의 이유로 증개축이 시급한 경우,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 훼손이 심각하여 증개축이 시급한 경우,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균열·부식 등으로 증개축이 시급한 경우가 속하며, 단 건물 누수, 균열, 부식 상태 불량, 보통, 우수 3단계로 차등화하여 평가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의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주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주출입구 높이, 내부출입구, 내부복도, 내부계단, 승강기, 대·소변기 등 장애인 출입 및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 유지기준에서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 판정을 받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나) 노후도

노후정도는 어린이집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점은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증개축 및 개보수비 지원 기준까지를 한다. 단, 어린이집 단독 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고,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복합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한다.

다)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해당 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단, 증개축비 지원 시에는 해당 권역의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하고, 개보수비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을 적용한다.

라) 지역특성

지역특성 세부기준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산업단지, 군관사지역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 밀집지역은 임대아파트 단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다수 거주 지역이나 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주택임대아파트 등의 임대아파트 단지, 해당 권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밀집지역

을 고려한다. 둘째, 농어촌 지역은 읍면지역 중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을 선정한다. 셋째,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고려한다. 넷째,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지역 군부대 인근(군부대 외곽)에 설치된 관사로서 민간인의 자녀도 입소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경우에 선정한다.

〈표 V-1-3〉 증개축비 선정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시급성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증개축이 시급한 지역	15
	· 건물누수· 균열· 부식 등의 안전성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불량(10점)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보통(5점)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우수(0점)	10
노후도	· 건축년도 20년 이상(20점) · 건축년도 15년 이상 20년 미만(18점) · 건축년도 10년 이상 15년 미만 · 건축년도 5년 이상 10년 미만(14점) · 건축년도 5년 미만(10점)	20
정원 충족률	· 정원충족률 90% 이상(20점) ·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18점) ·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15점) ·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12점) · 정원충족률 60% 미만(10점)	20
지역특성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다문화지역, 산업단지 등 해당 여부 - 취약지역 2개 이상 해당(15점) - 취약지역 1개 해당(10점) - 비해당(5점)	15
예산 지원	· 2005년 이전 지원(10점) · 2006년 지원(8점) · 2007년 지원(6점) · 2008년 지원(5점) · 2009년 지원(4점)	10
평가인증	· 평가인증 유지(10점) · 진행중(7점) · 미인증(5점)	10
행정 처분 이력	· 자격 취소,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10점) · 자격 정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5점) · 시정· 변경 명령, 민원 발생(-3점)	-10 (감점)

마) 예산지원

예산지원은 지자체 자체예산이 아닌 국고지원을 받은 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 국고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때에는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바) 평가인증

평가인증 기준은 평가인증 유지와 진행중, 미인증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사)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자격 취소, 운영 정지, 과징금 처분, 자격정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따른다.

〈표 V-1-4〉 개보수비 선정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시급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누수·균열 등의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불량(20점)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보통(10점)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우수(0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개선 이행 대상(10점) (각 항목 해당 시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개선 명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부적합 판정 - 주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주출입구 높이, 내부출입구, 내부복도, 내부계간, 승강기, 대·소변기 등을 장애인이 출입 및 사용이 어려운 경우 	10
노후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년도 20년 이상(20점) · 건축년도 15년 이상 20년 미만(18점) · 건축년도 10년 이상 15년 미만(16점) · 건축년도 5년 이상 10년 미만(14점) · 건축년도 5년 미만(10점) 	20

(표 V-1-4 계속)

구분	평가항목	배점
예산지원 (5)	· 2005년 이전 지원(5점) · 2006년 지원(4점) · 2007년 지원(3점) · 2008년 지원(2점) · 2009년 지원(1점)	5
지역특성 (10)	· 농어촌지역,저소득밀집지역,다문화지역,산업단지 등 해당 여부 - 취약지역 2개 이상 해당(10점) - 취약지역 1개 해당(7점) - 비해당(5점)	10
정원 충족률 (10)	· 정원충족률 90% 이상(10점) ·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9점) ·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7점) ·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6점) · 정원충족률 60% 미만(5점)	10
평가인증 (10)	· 평가인증 유지(10점) · 진행중(7점) · 미인증(5점)	10
행정처분 이력	· 자격 취소,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10점) · 자격 정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5점) · 시정·변경 명령, 민원 발생(-3점)	-10 (감점)

3)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선정기준은 앞서 살펴본 정부지원시설 개보수비 지원기준 중 지역특성과 예산지원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동일하게 채택하였고, 용자금 지원비율을 추가하였다. 각 세부기준의 점수는 정부지원시설 개보수비 지원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배점하였다. 시급성은 가장 높은 40점, 노후도와 용자금 비율은 각 20점, 정원충족률과 평가인증 여부는 각 10점, 행정처분 이력은 감점 10점으로 할당하였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은 민간개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단, 용자지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의거 제한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거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때 영아보

육법 시행규칙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용자지원 선정기준은 다음의 세부기준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되, 지역별(시도, 시군구)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도록 한다(표 V-1-5 참조).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 평가인증 유지시설, 2순위 정원충족률이 높은 시설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기준표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급성

시급성은 건축물 철거, 어린이집 건물·부지가 도로 부지에 편입 등의 이유로 증개축 또는 어린이집 이전이 시급한 경우,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 훼손이 심각하여 증개축 또는 이전이 시급한 경우,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균열·부식 등으로 증개축 또는 시설이전이 시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건물 누수, 균열, 부식 상태 불량, 보통, 우수 3단계로 차등화하여 평가한다.

다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의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주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주출입구 높이, 내부출입구, 내부복도, 내부계단, 승강기, 대·소변기 등 장애인 출입 및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실내공기질 측정 유지기준에서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 판정을 받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나) 노후도

노후정도는 어린이집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점은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증개축 및 개보수비 지원 기준까지를 한다. 단, 어린이집 단독 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고,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복합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한다.

다) 어린이집 용자금 비율

환경개선 용자 지원 시 어린이집 총 용자금 비율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라)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해당 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마) 평가인증

평가인증 기준은 평가인증 유지, 진행중, 미인증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바)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자격 취소,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 자격정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따른다.

〈표 V-1-5〉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금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시급성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증개축이 시급한 지역	15
	· 건물누수·균열 등의 안전성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불량(15점)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보통(10점)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우수(0점)	15
	·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중이용시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개선 이행 대상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개선 명령(10점)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부적합 판정(10점) - 주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주출입구 높이, 내부출입구, 내부복도, 내부계간, 승강기, 대·소변기 등을 장애인이 출입 및 사용이 어려운 경우(10점)	10
노후도	· 건축년도 20년 이상(20점) · 건축년도 15년 이상 20년 미만(18점) · 건축년도 10년 이상 15년 미만(16점) · 건축년도 5년 이상 10년 미만(14점) · 건축년도 5년 미만(10점)	20
용자금 비율	· 용자금 비율 20% 미만(20점) · 용자금 비율 20~30% 미만(15점) · 용자금 비율 30~40% 미만(10점) · 용자금 비율 40~50% 미만(5점)	20

(표 V-1-5 계속)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원 충족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충족률 90% 이상(10점) ·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9점) ·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7점) ·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6점) · 정원충족률 60% 미만(5점) 	10
평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 유지(10점) · 진행중(7점) · 미인증(5점) 	10
행정처분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취소,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10점) · 자격 정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5점) · 시정·변경 명령, 민원 발생(-3점) 	-10 (감점)

2.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정부의 기능보강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선정기준과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보강사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가. 기능보강 지원사업 예산 증액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한다. 기능보강비 지원사업 총 예산은 2012년 기준 11,86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정도 삭감되었다. 2008년 24,039백만원에서 2010년 9,438백만원까지 삭감되었다가 다시 증액되는 등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이 전체 보육사업 국고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7%에서 2009년 1.2%, 2010년 0.4%로 크게 줄었고, 2011년 0.5%, 2012년 0.4%로 이 선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2013년 0~5세 무상보육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서 인프라 확충 없는 무상보육은 보육 대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기능보강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나. 기능보강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기능보강비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개보수를 위해 1개소당 연평균 1,225.5만원을 자체 부담하였고, 법인어린이집은 평균 3,013만원을 지출하였다. 기능보강비 지원액은 2007년 인상 후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2007년 이후 매년 3~4% 상승하여 왔으나(통계청, 2011) 기능보강비 지원단가는 5년전과 동일하다. 현장에서는 지원단가에 맞춰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능보강사업 추진 후 보수공사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를 추가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능보강비 지원단가는 소비자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기능보강비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한다(양미선 외, 2012).

다. 보육인프라 구축 위한 사업 추진

실적 위주의 사업 추진보다 보육수요에 대응 가능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한다. 2012년 기준 사업량은 948건으로 2011년보다 다소 줄었다. 2008년 926건에서 2010년 667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사업예산에 따라 사업량의 변동 폭이 크다.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1년, 2012년은 사업량은 비슷한 수준이나 예산규모는 절반 수준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보다 단가가 낮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보육 분담률을 늘릴 수 있는 규모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시군구 보육공무원 대상으로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을 조사한 양미선 외(2012)의 연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55.7%로 가장 많았고,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과 공동주택어린이집 전환이 10%대였으며, 2순위는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신축 순이었다. 즉, 시군구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나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부지 확보가 어렵고 건축비 등의 예

산 규모가 커서 추진이 쉽지 않지만,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와 용도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양미선 외(2012)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30% 분담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을 때, 2011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2116개에서 5,379개소까지 늘어나고, 이용 아동 수는 143,035명에서 399,685명까지 증가한다.

라.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최대한도액 차등화 및 저금리 지원, 신청절차 일원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최대한도액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신청절차는 담당 은행과 일원화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심층면담결과, 환경개선 용자지원 최대한도액이 어린이집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용자지원 이율도 시중 은행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정부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용자지원 신청 시 시도로부터 지원신청 자격을 얻어도 담당 은행에서 담보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신청절차를 반복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와 같이 환경개선 용자지원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최대한도액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며, 시세를 반영하여 설정한다. 또한 이율도 2012년 2/4분기 3.55%로 시중 대출금리 4~5%와 큰 차이가 없어 용자지원이 어린이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정책인 만큼 금리를 낮춰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여준다. 신청절차는 시도와 담당 은행과 일원화하고, 관련 서류나 담보 등도 담당 은행과 협의하여 통일시킨다.

마. 기능보강지원사업 관리 강화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능보강 지원사업의 관리를 강화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비율이 53.3%로 절반 정도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지원 횟수는 평균 0.79회로 1회가 46.7%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이내에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세우고 있으나 2회 이상이 33.1%나 되었다. 법인어린이집 증개축비 지원 비율이 7.9%로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낮았다.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기능

보강비 지원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개원한 지 일정기간 이상된 어린이집 순으로 지원이 36.6%,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긴급상황 발생 어린이집 지원 22.8%이나 선정기준 없이 담당공무원이 결정한다는 비율도 13%나 되었다.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최근 3년 이내에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바. 기능보강비 선정기준 의무화

기능보강지원 사업 추진 시 기능보강비 선정기준 적용을 의무화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를 비롯한 정부지원시설(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증개축비, 개보수비 선정기준을 기능보강지원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말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및 증개축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개보수비는 사업량이 많아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정부지원시설 증개축비뿐만 아니라 개보수비 지원 시에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한다.

3. 맺는말

본 보고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비 및 정부지원시설 증개축비, 개보수비 등의 기능보강비 및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을 개발하고,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실태 및 요구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및 민간개인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금 지원 관련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16개 시도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민간개인어린이집담당자 대상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인 어린이집의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의 기능보강비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어린이집 206개소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수혜 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민간개인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제도에 대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하고, 기능보강비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적 위주의 사업 추진보다 보육수요에 대응 가능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최대한도액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저금리로 지원하며, 신청절차는 시도와 담당 은행을 일원화한다. 마지막으로 기능보강지원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며, 기능보강지원 사업 추진 시 기능보강비 선정기준 적용을 의무화한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의 어린이집 지원이 좀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 절차나 단가, 기준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20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2011).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서문희·양미선(2011).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유희정·이미화·민현주·강민정·선보영·서영숙·이영환·백혜리·이순영·최혜영·송영주·강정원·최은영(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Abstract

Study on the Financing Support Standards for Functionality Enhance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Childcare Centres

MiSun, Yang MoonHee, Su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arantee fair execution of government budget and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by establishing objective and feasible standards of financing support provided to childcare centres for functionality enhance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study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methods. First, examine policies, laws, and statistics on the financing support provided for functionality enhance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Second, conduct an on-line survey to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functionality enhancement fund. Third, targeting 206 corporation childcare centre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ng support for functionality enhancement. Fourth, have in-depth interviews with principals of three different types of childcare centres—public childcare centres, corporation childcare centres, and private childcare centres. Fifth, form an advisory council that consists of childcare officials, principals of childcare centres, heads of childcare information centres, and academic experts, to collect opinions and design questionnair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is paper establishes standards of financing support provided to public childcare centres for construction of a new building, reconstruction and extension, and renovation and repair. The study also establishes standards of financing support provided to private childcare centres for their environmental improvement. Additionally, this paper recommends policy direction to ensure fair and reasonable execution of projects aiming to enhance functionalities of childcare centres. In details, the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five measures. First, increase government fund so that functionality-enhancement projects can be operated on a more stable basis. Second, build infrastructure that can meet actual childcare demand, instead of providing support just to meet target numbers. Third, raise the ceiling of the financial support for functionality enhancement. Fourth, establish objective support standards and strengthen monitoring to ensure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fair and impartial support. Fifth, raise the ceiling of the financing support and lower interest rates for private childcare centres taking part i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부 록

부록 1. 부록 표

부록 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금
선정기준(안)

부록 3. 시도 및 시군구 조사표

부록 1. 부록 표

〈부표 IV-1-1〉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시도	시군구
서울(2)	명륜3가동, 잠실7동
부산(7)	동광동, 광복동, 남포동, 범일제1동, 남항동, 선두구동, 천가동
대구(1)	유가면
인천(9)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양사면, 송해면, 서도면,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광주(3)	석곡동, 임곡동, 삼도동
대전(1)	대청동
울산(5)	강동동, 서생면, 두동면, 두서면, 삼동면
경기(16)	서탄면, 원신동, 창릉동, 장항1동, 과림동,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울면, 고삼면, 중부면, 미산면, 왕징면, 중면, 장남면
강원(25)	남면, 북산면, 왕산면, 노곡면, 가곡면, 신기면, 두촌면, 내촌면, 서면(홍천군), 갑천면, 상동읍, 김삿갓면, 북면, 남면, 수주면, 화암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수동면, 서면(양양군), 현북면
충북(30)	살미면, 양성면, 소태면, 청풍면, 한수면, 속리산면, 장안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내북면, 산외면,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군서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양산면, 감물면, 장연면, 칠성면, 문광면, 소수면, 가곡면, 적성면, 단성면
충남(38)	수신면, 동면, 사곡면, 주포면, 주산면, 미산면, 신도안면, 대호지면, 면천면, 제월면, 부리면, 전동면, 내산면, 구룡면, 옥산면, 충화면, 양화면, 초촌면,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 시초면, 문산면, 종천면, 운곡면, 대치면, 목면, 장평면, 장곡면, 은하면, 서부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봉산면, 남면, 근흥면, 이월면
전북(65)	나포면, 중앙동, 응포면, 성당면, 낭산면, 망성면, 용동면, 소성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감곡면, 산내면, 초산동, 주천면, 수지면, 대강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백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진봉면, 봉남면, 황산면, 광활면, 비봉면, 경천면,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정천면, 주천면, 부남면, 번암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청웅면,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신덕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인계면, 금과면, 적성면, 성송면, 심우원면, 성내면, 신흥면, 부안면,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보안면, 상서면, 위도면

(부표 IV-1-1 계속)

시도	시군구
전남(78)	만호동, 삼일동, 월등면, 송광면, 다도면, 옥룡면, 다압면, 봉산면, 고서면, 남면, 대덕면,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오곡면, 삼기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겸면, 오산면,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광의면, 용방면, 점암면, 남양면, 영남면, 동일면, 노동면, 미력면, 겸백면, 읍어면, 문덕면, 응치면,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북면, 남면, 장동면, 유치면, 부산면, 대구면, 신진면, 작천면, 움천면, 마량면, 삼산면, 현산면, 계곡면, 마산면, 금정면, 서호면, 몽탄면,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낙월면, 진원면, 동화면, 삼서면, 서삼면, 북일면, 북하면, 금당면, 생일면, 군내면, 자은면, 팔금면
	신광면, 죽장면, 기북면, 보덕동, 남면, 감천면, 조마면, 구성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와룡면, 남후면, 남선면, 도산면, 무을년, 옥성면, 도개면, 평은면, 문수면, 안정면, 봉현면, 화산면, 화북면, 대창면, 중동면, 사벌면, 낙동면, 청리면, 외남면, 내서면, 외서면, 은척면, 이안면, 화남면, 영순면, 산양면, 동로면, 점촌4동, 용성면, 남산면,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산성면, 고로면, 단촌면, 옥산면, 사곡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부동면, 부남면, 청기면, 일월면,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병곡면, 창수면, 각남면, 각북면, 운문면, 매전면, 덕곡면, 운수면, 우곡면, 금수면, 대가면, 지천면, 상리면, 감천면, 보문면, 개포면, 지보면, 법전면, 소천면, 재산면, 상운면, 서면, 북면
경북(88)	사릉면, 미천면, 도산면, 욱지면, 한산면, 사랑면, 중앙동, 축동면, 곤명면, 상동면, 청도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 원동면,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봉수면, 궁류면, 유곡면, 함안면, 범수면, 여항면, 성산면, 이방면, 유어면, 계성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삼산면, 하일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개천면, 구만면, 마암면, 상주면, 서면, 고흥면, 설천면, 횡천면, 고전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차황면, 오부면, 금서면, 삼장면, 생비량면, 휴천면, 유림면, 지곡면, 서하면, 백전면, 병곡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북면, 봉산면, 묘산면, 울곡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대양면, 쌍백면, 용주면
	제주(1) 일도1동

자료: 보건복지부(2012). 내부자료(2012. 7월 기준)

〈부표 IV-1-2〉 재정자립도 전국 단체별 최고·최저

구분	단위: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88.7	55.0	34.8	37.1	16.4	36.0
최고(단체명)	서울본청	인천본청	경기도본청	경기성남	울산울주	서울서초
최저(단체명)	-	41.1 광주본청	14.6 전남본청	8.3 전북남원	7.8 전북고창	13.6 부산영도

자료: 행정안전부(2011). 지방재정통계 지방예산현황.

〈부표 IV-1-3〉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

단위: 단체수, %

구분	합계	구성비(%)	시·도	시	군	자치구
전체	244	100	16	74	85	69
10%미만	12	5	-	1	11	-
10-30%미만	145	59	7	36	69	33
30-50%미만	59	24	3	24	5	27
50-70%미만	23	9	4	13	-	6
70-90%미만	5	2	2	-	-	3
90%이상	-	-	-	-	-	-

자료: 행정안전부(2011). 지방재정통계 지방예산현황.

〈부표 IV-1-4〉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

단위: %

시도별	시도별평균 (순계규모)	특별시광역시 (총계규모)	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전체	52.3	69.1	34.8	37.1	16.4	36.0
서울	90.2	88.7	-	-	-	46.0
부산	57.4	52.9	-	-	35.0	26.3
대구	52.8	47.6	-	-	35.9	25.5
인천	71.0	70.4	-	-	15.2	36.8
광주	46.6	41.1	-	-	-	19.7
대전	58.3	52.7	-	-	-	24.4
울산	71.2	63.6	-	-	46.3	36.4
경기	72.6	-	61.7	51.9	28.9	-
강원	26.9	-	22.5	23.9	14.2	-
충북	34.2	-	27.6	28.2	21.4	-
충남	35.5	-	28.6	31.9	16.5	-
전북	26.0	-	21.1	21.1	14.1	-
전남	21.4	-	14.6	26.9	12.2	-
경북	28.3	-	22.5	26.7	13.1	-
경남	43.3	-	36.6	35.0	14.2	-
제주	28.5	-	28.2	-	-	-

자료: 행정안전부(2011). 지방재정통계 지방예산현황.

〈부표 IV-1-5〉 재정자립도 자치단체별 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재정자립도	소계(A+B)	지방세(A)	세외수입(B)	일반회계예산
전체	52.3	61,340,743,814	48,758,566,580	12,582,177,234	117,258,979,344
서울	90.2	15,539,337,865	13,440,764,306	2,098,573,559	17,228,416,545
부산	57.4	3,632,632,565	2,919,583,000	713,049,565	6,325,974,380
대구	52.8	2,291,528,282	1,835,481,000	456,047,282	4,338,593,580
인천	71.0	3,483,976,103	2,920,961,010	563,015,093	4,908,056,174
광주	46.6	1,244,305,001	1,019,193,283	225,111,718	2,671,539,151
대전	58.3	1,390,594,468	1,155,292,323	235,302,145	2,386,167,275
울산	71.2	1,502,519,458	1,237,779,780	264,739,678	2,111,517,752
경기	51.9	7,811,172,254	5,891,095,817	1,920,076,437	15,057,950,985
강원	23.9	642,726,195	407,922,169	234,804,026	2,690,884,917
충북	28.2	505,873,394	370,409,018	135,464,376	1,791,221,649
충남	31.9	1,154,965,180	862,062,155	292,903,025	3,615,956,977
전북	21.1	745,207,882	531,612,593	213,595,289	3,530,966,536
전남	26.9	680,017,092	482,028,132	197,988,960	2,527,313,729
경북	26.7	1,500,694,344	957,056,254	543,638,090	5,620,116,000
경남	35.0	1,954,248,855	1,381,911,624	572,337,231	5,581,831,782
제주	28.5	670,482,637	502,800,000	167,682,637	2,351,600,073

자료: 행정안전부(2011). 지방재정통계 지방예산현황.

〈부표 IV-1-6〉 재정자립도 전국 단체별 최고·최저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전체	89.6	71.9	49.2	68.4	62.9	55.6
최고	89.6	77.1	67.4	90.1	74.3	84.7
(단체명)	서울본청	인천본청	제주도본청	경기과천	강원인제	서울중구
최저	-	65.2	34.1	54.0	49.7	32.8
(단체명)	-	광주본청	전남본청	전북김제	인천강화	광주북구

자료: 행정안전부(2011). 지방재정통계 지방예산현황.

〈부표 IV-1-7〉 재정자주도 분포 현황

단위: 단체수, %

구분	합계	구성비(%)	시·도	시	군	자치구
전체	244	100	16	74	85	69
10%미만	-	-	-	-	-	-
10-30%미만	-	-	-	-	-	-
30-50%미만	39	16	7	-	1	31
50-70%미만	157	64	3	51	76	27
70-90%미만	47	19	6	22	8	11
90%이상	1	-	-	1	-	-

자료: 행정안전부(2011). 지방재정통계 지방예산현황.

〈부표 IV-1-8〉 시도별 지방세 구성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별	2008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45,479,732	100.0	45,167,790	100.0	49,159,805	100.0
서울	12,537,671	27.6	11,922,706	26.4	12,074,840	24.5
부산	2,594,052	5.7	2,739,707	6.0	3,062,239	6.2
대구	1,627,708	3.6	1,573,443	3.5	1,818,648	3.7
인천	2,321,260	5.1	2,360,091	5.2	2,428,823	4.9
광주	901,716	2.0	976,111	2.2	1,077,114	2.2
대전	1,064,934	2.3	1,000,099	2.2	1,162,679	2.4
울산	1,127,065	2.5	1,060,227	2.3	1,230,508	2.5
경기	11,723,657	25.8	11,905,905	26.4	12,876,723	26.2
강원	1,074,505	2.4	1,065,003	2.4	1,222,509	2.5
충북	1,102,913	2.4	1,094,931	2.4	1,310,314	2.7
충남	1,739,467	3.8	1,793,495	4.0	2,097,037	4.3
전북	1,126,645	2.5	1,091,309	2.4	1,287,562	2.6
전남	1,248,968	2.7	1,288,287	2.9	1,434,292	2.9
경북	1,915,009	4.2	2,001,834	4.4	2,220,366	4.5
경남	2,929,103	6.4	2,880,091	6.4	3,334,664	6.8
제주	445,059	1.0	414,551	0.9	521,487	1.1

자료: 행정안전부(2011). 2011 지방세정연감.

부록 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지원 선정기준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선정기준표(안)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1)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역

2) 지원 제외대상

- 국비 지원없이 확충 가능한 경우
 - 지자체 재원으로 어린이집이 포함된 복합시설 설치
 - 전경련 등 타 기관에서 재정 지원이 결정된 경우 등
(예: 전국경제인연합회, LG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 신축사업 신청 지역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미 있는 경우
 - 예정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국공립이 있거나 해당 지역 보육수요가 낮은 경우
- 당해연도 동일 시군구 중복지원 시 제외
 - 당해연도 지원받은 시군구는 다음연도 미지원
- 재건축 등 도시계획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 어린이집 건물 또는 부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등 기존 국공립시설 이전,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단 정원 증가 시 지원 가능
- 최근 3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역

3) 지원 규모

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개소당 330㎡까지 지원,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 1,201,300원/㎡(국비, 지방비 포함)

나) 시설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 개소당 330㎡까지 지원,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국비지원한도액(237,857천원)까지 지원

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 개소당 330㎡까지 지원,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 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4) 지원대상 선정기준표

가) 선정 기준

○ 평가기준(①~④)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되, 지역별(시도, 시군구)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함.

○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1순위: 저소득밀집지역
- 2순위: 농어촌 지역

나) 선정기준표 세부기준

(1) 지역특성

○ 저소득밀집지역: 임대아파트 단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다수 거주지역

- 임대아파트 단지: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주택임대아파트 등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밀집지역: 해당 권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율 고려
(※ 201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율 전국 평균 2.9%)
- 농어촌지역: 읍면지역 중 재정자주도 낮은 지역
-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
-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지역 군부대 인근(군부대 외곽)에 설치된 관사로서 민간인의 자녀도 입소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경우
- (2) 국공립 설치수
 - 해당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기초로 평가함.
 -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우선 지원
- (3) 정원충족률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해당 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기준
 - 계산식 = (권역 내 어린이집 현원)/(권역 내 어린이집 정원) × 100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인정함. 반올림 인정하지 않음.
- (4) 지방 재정자주도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율
 - 전년도 지방 재정자주도 기준으로 평가함.

〈부표 V-1-1〉 지역규모별 지방 재정자주도

단위: %

구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1년도	77.2	49.2	68.4	62.9

- 대도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구 단위 지역
- 중소도시: 16개 시도의 시 단위 지역
- 농어촌: 16개 시도 군 단위 지역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인정함. 반올림 인정하지 않음.

(5) 전년도 실집행률

○ 전년도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의 집행률 기준

〈부표 V-1-2〉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선정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지역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밀집지역(20점) ○ 농어촌지역(15점) ○ 산업단지, 군관사지역 등(10점) 	20
국공립 설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20점)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10점) ○ 해당 권역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이상(5점) 	20
정원 충족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90% 이상(20점)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18점)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14점)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12점) ○ 해당 권역내 정원충족률 60% 미만(10점) 	20
지방 재정 자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도 30% 미만(10점)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8점) - 재정자립도 40% 이상 50% 미만(6점) - 재정자립도 50% 이상(5점) ○ 농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도 10% 미만(10점) - 재정자립도 10% 이상 20% 미만(8점) - 재정자립도 20% 이상 30% 미만(6점) - 재정자립도 30% 이상 40% 미만(4점) - 재정자립도 40% 이상(3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집행률 80% 이상(5점) ○ 실집행률 70% 이상 80% 미만(3점) ○ 실집행률 60% 이상 70% 미만(1점) ○ 실집행률 60% 미만(0점) 	5

※ 기준시점: 2012년 6월 30일 기준

※ 지역특성은 중복 해당 가능함.

※ 해당 권역은 읍·면, 동 기준으로 함.

※ 지방재정자립도, 전년도 실집행률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인정함. 반올림 인정하지 않음.

2. 환경개선비

가.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1) 지원대상

가) 증개축비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나) 개보수비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중 인건비 국고 지원시설

2)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
 - 특별한 사정(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 시 등)의 경우에는 지원함.
 - 최근 3년 이내: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않음('09~'11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거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제외)
 - 영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 10]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 지원 규모

가) 증개축비

- 개소당 132㎡까지 지원

- 지원단가: 751,440원/m²(국비, 지방비 포함)

나) 개보수비

- 개소당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4) 지원대상 선정기준표

가) 선정 기준

- 평가기준(①~⑦)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되, 지역별(시도, 시군 구)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함.
-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1순위: 농어촌지역
 - 2순위: 평가인증 유지 시설

나) 선정기준표 세부기준

(1) 시급성

- 건축물 철거, 어린이집 건물·부지가 도로 부지에 편입 등의 이유로 증개축이 시급한 경우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 훼손이 심각하여 증개축이 시급한 경우
-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균열·부식 등으로 증개축이 시급한 경우
 - 건물 누수, 균열, 부식 상태 불량, 보통, 우수 3단계로 차등화하여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의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주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주출입구 높이, 내부출입구, 내부복도, 내부계단, 승강기, 대·소변기 등 장애인 출입 및 이용이 어려운 경우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2] 참조
 - 실내공기질 측정 유지기준에서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 판정을 받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

른 검사결과 기준일은 2012년 6월말까지 한함.

(2) 노후도

- 건축년도 기준시점은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증개축 및 개보수비 2012년 6월 말 기준
 - 어린이집 단독 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준공일 기준
 -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복합 건물의 경우, 복합 건물 준공일 기준

(3) 예산지원

- 지자체 자체예산이 아닌 국고지원 받은 년도 기준
 - 최근 3년 이내 국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년도 기준으로 함.

(4) 지역특성

-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산업단지내, 다문화가정지역, 군관사지역 등 특정지역 해당 여부
- 저소득밀집지역: 임대아파트 단지 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밀집지역을 말함.
 - 임대아파트 단지: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주택임대아파트 등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밀집지역: 해당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율 3% 이상 지역
(201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율 평균 2.9%를 기초로 기준 산정)
- 농어촌지역: 읍면지역 중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
-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
-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지역 군부대 인근(군부대 외곽)에 설치된 관사로서 민간인의 자녀도 입소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경우

(5) 정원충족률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 증개축비 지원: 해당 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기준

- 개보수비 지원: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기준

- 계산식 = (어린이집 현원)/(어린이집 정원) × 100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인정함. 반올림 인정하지 않음.

(6) 평가인증

- 평가인증 기준은 2012년 6월 말 기준임.
 - 평가인증 진행중 : 2012년 신규인증 5~9기, 재인증 5~8기 신청 시설

(7) 행정처분 이력

-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름.
- 자격 취소,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 자격정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9]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10]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따름.

〈부표 V-1-3〉 증개축비 선정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시급성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증개축이 시급한 지역(15점)	15
	○ 건물누수·균열·부식 등의 안전성	10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불량(10점)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보통(5점)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우수(0점)		
노후도	○ 건축년도 20년 이상(20점)	20
	○ 건축년도 15년 이상 20년 미만(18점)	
	○ 건축년도 10년 이상 15년 미만(16점)	
	○ 건축년도 5년 이상 10년 미만(14점)	
	○ 건축년도 5년 미만(10점)	
정원 충족률	○ 정원충족률 90% 이상(20점)	20
	○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18점)	
	○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15점)	
	○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12점)	
	○ 정원충족률 60% 미만(10점)	
지역 특성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다문화지역, 산업단지 등의 해당 여부	15
	- 취약지역 2개 이상 해당(15점)	
	- 취약지역 1개 해당(10점)	
	- 비해당(5점)	
예산 지원	○ 2005년 이전 지원(10점)	10
	○ 2006년 지원(8점)	
	○ 2007년 지원(6점)	
	○ 2008년 지원(5점)	
	○ 2009년 지원(4점)	
평가 인증	○ 평가인증 유지(10점)	10
	○ 진행중(7점)	
	○ 미인증(5점)	
행정 처분 이력	○ 자격 취소,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10점)	-10
	○ 자격 정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5점)	
	○ 시정·변경 명령, 민원 발생(-3점)	

〈부표 V-1-4〉 개보수비 선정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누수·균열 등의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불량(20점)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보통(10점)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우수(0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개선 이행 대상(각 항목 해당 시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개선 명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부적합 판정 - 주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주출입구 높이, 내부출입구, 내부복도, 내부계간, 승강기, 대·소변기 등을 장애인이 출입 및 사용이 어려운 경우 	
노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년도 20년 이상(20점) ○ 건축년도 15년 이상 20년 미만(18점) ○ 건축년도 10년 이상 15년 미만(16점) ○ 건축년도 5년 이상 10년 미만(14점) ○ 건축년도 5년 미만(10점) 	20
예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이전 지원(5점) ○ 2006년 지원(4점) ○ 2007년 지원(3점) ○ 2008년 지원(2점) ○ 2009년 지원(1점) 	5
지역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다문화지역, 산업단지 등의 해당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역 2개 이상 해당(10점) - 취약지역 1개 해당(7점) - 비해당(5점) 	10
정원충족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충족률 90% 이상(10점) ○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9점) ○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7점) ○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6점) ○ 정원충족률 60% 미만(5점) 	10
평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 유지(10점) ○ 진행중(7점) ○ 미인증(5점) 	10
행정처분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취소,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10점) ○ 자격 정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5점) ○ 시정·변경 명령, 민원 발생(-3점) 	-10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 지원 선정기준표(안)

1.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1) 지원대상

- 민간개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2) 지원 제외대상

- 용자지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의거 제한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거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제외
 - 영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 10]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 용자 규모

- 환경개선과 시설이전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부표 V-1-5〉 환경개선 용자지원 기준

구분	한도액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	이율
환경개선	시설당 최대	- 3년 거치 4년 상환	변동금리 (2012년
	2천만원	- 연4회 원금균등 분할 상환	
시설이전	시설당 최대	- 3년 거치 4년 상환	2/4분기 3.55%)
	1억원	- 연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	

주: 용자 지원 시 용자지원 금융기관 여신규정 등에 의거 제한 가능

4) 지원대상 선정기준표

가) 선정 기준

- 평가기준(①~⑤)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되, 지역별(시도, 시군

구)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함.

-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1순위: 평가인증 유지 시설
 - 2순위: 정원충족률 높은 시설

나) 선정기준표 세부기준

(1) 시급성

- 건축물 철거, 어린이집 건물·부지가 도로 부지에 편입 등의 이유로 증개축 또는 어린이집 이전이 시급한 경우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 훼손이 심각하여 증개축 또는 이전이 시급한 경우
-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균열·부식 등으로 증개축 또는 시설이전이 시급한 경우
 - 건물 누수, 균열, 부식 상태 불량, 보통, 우수 3단계로 차등화하여 평가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의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주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주출입구 높이, 내부출입구, 내부복도, 내부계단, 승강기, 대·소변기 등 장애인 출입 및 이용이 어려운 경우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2] 참조
 - 실내공기질 측정 유지기준에서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 판정을 받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결과 기준일은 2012년 6월말까지 한함.

(2) 노후도

- 건축년도 기준시점은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증개축 및 개보수비 2012년 6월 말 기준
 - 어린이집 단독 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준공일 기준

-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복합 건물의 경우, 복합 건물 준공일 기준

(3) 어린이집 융자금 비율

- 환경개선 융자지원 시 어린이집 총 융자금 비율이 50%를 넘지 말아야 함.

(4) 정원충족률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 증개축비 지원: 해당 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기준
- 개보수비 지원: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기준

○ 계산식 = (어린이집 현원)/(어린이집 정원) × 100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인정함. 반올림 인정하지 않음.

(5) 평가인증

- 평가인증 기준은 2012년 6월 말 기준임.

- 평가인증 진행중 : 2012년 신규인증 5~9기, 재인증 5~8기 신청 시설

(6) 행정처분 이력

-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름.
- 자격 취소,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 자격정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9]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10]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따름.

<부표 V-1-6>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금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시급성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증개축이 시급한 지역(15점)	15
	○ 건물누수·균열 등의 안전성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불량(15점)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보통(10점) - 건물누수 및 균열, 부식 등 건축물 상태 우수(0점)	15
	○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개선 이행 대상(각 항목 해당 시 10점)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개선 명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부적합 판정 - 주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주출입구 높이, 내부출입구, 내부복도, 내부계간, 승강기, 대·소변기 등을 장애인이 출입 및 사용이 어려운 경우	10
노후도	○ 건축년도 20년 이상(20점) ○ 건축년도 15년 이상 20년 미만(18점) ○ 건축년도 10년 이상 15년 미만(16점) ○ 건축년도 5년 이상 10년 미만(14점) ○ 건축년도 5년 미만(10점)	20
용자금 비율	○ 용자금 비율 20% 미만(20점) ○ 용자금 비율 20~30% 미만(15점) ○ 용자금 비율 30~40% 미만(10점) ○ 용자금 비율 40~50% 미만(5점)	20
정원 충족률	○ 정원충족률 90% 이상(10점) ○ 정원충족률 80% 이상 90% 미만(9점) ○ 정원충족률 70% 이상 80% 미만(7점) ○ 정원충족률 60% 이상 70% 미만(6점) ○ 정원충족률 60% 미만(5점)	10
평가인증 접수	○ 평가인증 유지(10점) ○ 진행중(7점) ○ 미인증(5점)	10
행정처분 이력	○ 자격 취소,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10점) ○ 자격 정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5점) ○ 시정·변경 명령, 민원 발생(-3점)	-10

부록 3. 시도 및 시군구 기능보강비 담당 공무원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에 관한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조사**

시도	-	조사표 번호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자지원 등과 관련한 시도 보육 담당자의 의견을 묻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어린이집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응답자 담당지역	_____시·도		
전화번호	() -	Fax	

1.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기준 관련 질문

1.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으로 어떤 항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① 보육 수요
- ②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
- ③ 부지 확보
- ④ 지역특성(농산어촌지역, 저소득층, 산업단지 등)
- ⑤ 재정자주도
- ⑥ 해당 지역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 ⑦ 사업비 자부담
- ⑧ 기타()

2. 귀 시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원을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이유:

3. 다음은 환경개선비(증개축 및 개보수비) 지원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으로 어떤 항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① 사업의 시급성(안전성, 재난대비 등)
- ② 노후화 정도
- ③ 예산지원 여부
- ④ 특수보육 운영(장애아전담,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 등)
- ⑤ 평가인증
- ⑥ 지역특성(농산어촌, 저소득층밀집, 다문화지역 등)
- ⑦ 행정처분 이력
- ⑧ 어린이집 규모
- ⑨ 건축년도
- ⑩ 어린이집 유형
- ⑪ 사업비 자부담
- ⑫ 기타()

4. 다음은 환경개선비(증개축 및 개보수비) 선정 세부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7)번까지 각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1가지씩 선택하여 √표 해 주십시오.

1) 노후화 정도	① 건축년도 3년 단위	② 건축년도 5년 단위	③ 건축년도 10년 단위
2) 예산 지원	① 3년 이내	② 5년 이내	
3) 평가인증	① 평가인증 여부	② 평가인증 점수	
4) 사업비 자부담	① 자부담 여부	② 자부담 비율	
5) 어린이집 규모	① 정원 충족률	② 정원	③ 현원
6) 지역환경 조건	① 취약지역 해당 여부	② 취약지역별 차등화	
7) 행정처분	① 행정처분 여부	② 행정처분 유형별 차등화	

2. 다음은 환경개선 용자지원 세부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1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노후화 정도	① 건축년도 3년 단위	② 건축년도 5년 단위	③ 건축년도 10년 단위
2) 평가인증	① 평가인증 여부	② 평가인증 점수	
3) 어린이집 규모	① 정원 충족률	② 정원	③ 현원
4) 지역호나경	① 취약지역 여부	② 취약지역별 차등화	
5) 행정처분	① 행정처분 여부	② 행정처분 유형별 차등화	

III. 인적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② 대학 졸(3년제 이하) ③ 4년제 대학졸 ④ 대학원 졸
4.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12-35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용자 지원기준 마련 연구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36-7 93330